

한국이민법학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년 추계공동학술대회

결혼 · 이민 · 가족

일 시 2014년 10월 31일(금) 13:30~18:00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최종길홀)

주 최 한국이민법학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이민법학회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SNU Law Research Institute

프로그램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식

전체사회: 이현수 연구이사(건국대 법전원)

- 개회사: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

- 축사: 송석윤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제1부

사회: 최윤철 (건국대 법전원)

14:10~15:00 • 제1주제: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
이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

- 발표: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 토론: 현소혜 (서강대 법전원)

15:00~15:50 • 제2주제: 정책집단으로서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여성, 혹은 이민자?

- 발표: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 토론: Clifton R. Emery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15:50~16:10 휴식

제2부

사회: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16:10~17:00 • 제3주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발표: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토론: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17:00~17:50 종합토론

- 토론: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

-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17:50 ~ 18:00 폐회식

- 폐회사: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

목 차

【제1주제】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

— 이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 — 이 동진 1

토론문 현소혜 31

【제2주제】

정책집단으로서 한국의 결혼이민자

— 가족, 여성, 혹은 이민자? — 김혜순 35

【제3주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 이주에서 정주까지 — 김지영 67

토론문 김희강 91

【종합토론】

토론문 차용호 95

토론문 최성지 97

[제1주제]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

— 이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 I. 서론
- II. 이민법, 가족법, 형법에서 이주혼인의 규율
 - 1. 이민법, 가족법, 형법에서 관련 법리의 독자적 발전
 - 2. 이민법, 가족법, 형법상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온 법리의 의도치 않은 결합물로서 이주혼인에 대한 규율
- III. 검토
 - 1. 실체적 측면
 - 2. 절차적 측면
- IV. 결론

I. 서론

지난 15년간 국제혼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혼인의 비율은 약 1.2% 선에서 비교적 정체되어 있었으나, 1995년을 전후하여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3%로 정점을 찍었고, 2012년에도 여전히 8.6%에 이르고 있다.¹⁾ 이는 압도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특히 중국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혼인건수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1991년에는 전체 국제혼인건수 중 13.2%만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혼인이었으나, 2008년 이 비율

1) 보건복지부 간,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9호(2013), 27면.

은 77.8%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도 72.9%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대부분은 베트남, 중국 또는 조선족으로, 가령 2012년 이들의 비율은 각각 26.5%, 23.7%, 18.8%이었다.²⁾

이러한 증가는 1990년대 초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양국간 국교수립을 계기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³⁾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함에 따라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999년 정부가 결혼증개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것도⁴⁾ 이러한 증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이러한 외적 요소들 이외에 내적 요소들도 국제혼인건수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첫째, 불균형적인 경제성장과정의 일종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 남성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여성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결혼증개업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 여성들과 혼인하는 대가로 한국인 남성에게 상당한 돈(약 500만 원)을 주는 경우가 생겼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종종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대가를 결혼증개업자에게 지불하였다. 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대한 대가인 셈이다. 이는 그들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담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장래의 배우자를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을 결정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주된 동기는 경제적인 측면, 즉 한국에서 거주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주허가를 받는데 있다.⁵⁾

이러한, 혼인을 이주를 위한 수단으로 쓰는 현상(이주혼인)은 지난 세기 내내 여러 나라에서 목격된 바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르기 까지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이 그다지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과거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 이주해오려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이주해나가려는

2) 보건복지부 간(주 1), 27-28면.

3) 대부분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하여 강제이주당하거나 중국으로 탈출한 한국인의 후손으로,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한다.

4) 등록하지 아니한 결혼증개업을 금지한 가정의례법(제5조)은 1999년 대체 없이 폐지되었다.

5) 현소혜, “국제혼인의 이론과 실무”, 민사판례연구[XXXV](2013), 1179-1187면. 이러한 사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르지 아니하였다. Lynskey,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 of 1986: Till Congress Do Us Part”, 41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088 (1987) (미국); European Commission, Misuse of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Marriage for Convenience and False Declaration of Parenthood (2012), pp. 24 ff. (유럽)

한국인 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한국법이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경제성장과 세계화로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주하려고 하고 있다. 이주혼인의 문제도 이론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혼인에 대한 우리 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절차가 주로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하는 한 법적 쟁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주허가를 내주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성립 당시 실제로 혼인생활관계를 가질 것을 의도하였는가가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접근의 구체적인 상세와 그 성립과정부터 개관하기로 한다.

II. 이민법, 가족법, 형법에서 이주혼인의 규율

1. 이민법, 가족법, 형법에서 관련 법리의 독자적 발전

(1)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민법상의 특혜

다른 나라의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법도 내국인의 배우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래 있어왔던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내용 내지 성질이 변화하였다.

1948년 제정 국적법 하에서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내국인 남성의 외국인 처가 법률상 당연히, 즉 귀화신청 및 그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구 국적법 제3조 제1호). 다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즉,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혼인한 경우 그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같은 법 제12조 제1호). 그러므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국적을 상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적 규율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쟁을 촉발시켰다. 흥미를 끄는 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가 이들 두

규정에서 관하여 한 발언이다. 그는 “동양의 풍속에 짐, 가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짐의 주인, 어른은 남편이다; 그러므로 처는 비록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것이 옳다; 이 경우에 외국인인 처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⁶⁾ 이러한 발언은 이미 비대칭적 규율이 - 아마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 명문으로 선언되지 아니한 부부 동일국적의 원칙과 우리 국적법의 다른 두 원칙, 즉 이중국적 회피의 원칙 및 무국적 방지의 원칙의⁷⁾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규정들은 나아가 이들 원칙 상호간의 법률상 위계 내지 서열도 포함하고 있다. 세 원칙이 동시에 지켜질 수 없을 때에는 무국적 방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부부 동일국적의 원칙은 무국적 회피보다는 열위에 있으나 이중국적의 방지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제정 국적법은 이미 내국인 남성의 외국인 처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였으므로 우리 이민법의 두 기둥 중 하나로서 1963년 비로소 입법된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여지가 없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1997년 국적법이 대폭 개정되어 1998년 개정법이 발효하였다. 1997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이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원칙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마자 법무부는 서둘러 국적법 개정안을 완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불과 몇 달 만에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사소한 수정만을 가하여 이를 통과시켰다.⁸⁾ 이 개정은 주로 부계혈통주의를 일반적인 - 즉, 부모양계 - 혈통주의(ius sanguinis)로 대체하여 부모 누구든 그 국적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주된 의도였다. 그 결과 - 부모 양쪽의 서로 다른 국적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

6) 명순구·이철우·김기창,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2010), 59-60면.

7)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민의원에 출석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특성 보존을 위한 부계혈통주의, 이중국적의 회피 및 무국적자 발생 방지를 위한 예외적 출생지주의(ius soli)의 채택이 같은 법의 세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명순구·이철우·김기창(주 6), 55-56면.

8)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국적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 개정 국적법이 발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8년 개정 전 국적법의 몇몇 규정이 헌법 제3조 및 제36조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UN여성차별철폐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1979)도 이러한 개정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是以 협약을 가입할 당시 국적법 규정 때문에 제9조를 유보하고 이에 가입하여, 유보철회를 위해서는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명순구·이철우·김기창(주 6), 67-69면. 이 개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석동현, 국적법 (2011), 65-70면.

었으므로 - 그들 중 어느 한 국적은 보유하고 그 나머지는 포기하여 이중국적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⁹⁾

1998년 개정 국적법은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외국인 처의 한국 국적 당연취득을 폐지하였다. 한국인 남성의 외국인 처와 한국인 여성의 외국인 부(夫) 모두에게 한국 국적을 (당연히) 부여하는 안은 입법자들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안은 한국인의 - 처든 부(夫)이든 -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지 본래의 국적을 유지할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가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부부의 국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한도에서 부부 동일국적의 원칙은 깨어진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두 가지 점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 1998년 개정 국적법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특히 완화된 요건 하에서 귀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간이귀화, 1998년 개정 국적법 제6조 제2항). 한국인 배우자와 2년 6개월 이상 혼인상태로 한국 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3년 이상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그 중 1년 이상 한국 내에 주소를 유지하였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귀화(1998년 개정 국적법 제5조)에서와 같이 5년 간 한국 내에 주소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1998년 이후 몇 차례 변경되었다. 첫 번째 요건 중 주소 유지기간이 2년으로 감축되었고, 위 첫 번째 및 두 번째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아니하였다. 그 밖의 일반귀화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간이귀화허가를 거절할 재량을 갖고 있다.¹⁰⁾ 그러나 실무상으로 이러한 그 밖의 요건은 - 앞서 본 혼인 및 거주기간 요건보다 - 드물게 문제되었던 것처럼 보인다.¹¹⁾

둘째, 한국 국적 취득요건을 강화한 데 대한 일종의 보완장치로 아직 한국 국적을

9) 국적법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3조

1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또한 대법원 2010. 5. 12. 선고 2010두8348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두1675 판결도 참조.

11) 석동현(주 8), 125-126, 145, 151면.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한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 배우자에게 거주자격상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1984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6호가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증(査證; VISA)을 도입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로 이어지고 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영주권자(F-4 사증)의 외국인 배우자는 F-4 사증을,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F-6 사증을 각 그 자격에 티 잡아 받을 수 있고, 이들 사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갱신이 가능하다. 그 밖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¹²⁾ 사람도 F-6 사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혜는 - 국적법상 부부 동일국적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상위의 원칙인 - 가족결합(family unification) 원칙(내지 권리)로¹³⁾ 설명할 수 있다.

개정 전후에 걸쳐 고려된 원칙 내지 이의 자체는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중국적의 회피와 무국적의 방지 및 (경우에 따라 부부에게 동일 국적을 부여하거나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추구되는) 가족결합의 촉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때로 충돌하기도 하는 이들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달라졌다.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여전히 우대받고 있지만, 그 혜택은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다.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밖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¹⁴⁾ 이들 이익 사이의 우열도 간단치 아니하게 되었다. 보다 복잡한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때로는 당해 사안의 특수한 사정들도 고려되게 되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였는가? 그 답은 혼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규율하는가라는, 가족법적인, 또는 가족법에 직결된 문제에 있었다.

(2) 가족법상 혼인에 대한 이해

한국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혼인과 가족에 관한

12) 국적법 제6조 제2항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유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음에 유의할 것.

13) 박귀천·이유봉,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2012), 81-83면; 김병록,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조선대 법학논총 제17권 제3호(2010), 27면 이하.

14) 이러한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그 밖에 이중국적 회피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변화를 겪었다. 1998년 개정 국적법은 이 원칙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규정 중 상당수가 가부장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컨대 민법 제826조 제2항은 처는 부(夫)의 주소에서 동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909조 제1항은 부(父)만이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1960년 제정 민법은 아울러 고정된 가족 내 성역할 관념을 전제하고 있었다. 제833조 및 제830조 제2항에 따르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夫)가 생활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부 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되었다.¹⁵⁾ 이러한 규정은 일정한 혼인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부(夫)는 가정 밖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 부(夫)는 가장(家長)으로서 가족의 주거 및 기타 자녀양육방법을 포함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처는 이를 따른다. 이 체제에서 처가 이혼하는 경우 그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곤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1960년 제정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엄격하게 따르고 있어,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별산제는 처가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고유의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적었던 만큼 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이혼이 쉽지 아니하였다. 또한 실제 이혼이 쉽사리 허용되지도 아니하였다. 민법 제840조는 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不貞行爲)를 하였거나, 악의로 자신을 유기하였거나, 자신 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부(夫)나 처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상 이혼).¹⁶⁾ 다른 이혼사유들과 달리 마지막 이혼사유, 즉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무책이혼사유로 분류될 수도 있었다. 민법이 유책주의 이혼법을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¹⁷⁾ 그러나 대법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유책주의의 이혼법에 가깝게 운용하였다. 첫째, 판례상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¹⁸⁾ 둘째, 혼

15)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서울대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503-504면.

16) 민법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이하)과 재판상 이혼의 두 이혼방법을 인정한다. 실제 이혼의 대다수는 협의이혼이다. 이는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보다 더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위한 교섭은 그 자체 재판상 이혼에 대한 법적 규율을 반영하게 마련이다. Mnookin and Kornhauser, “Bargaining in the Shadow of the Law: The Case of Divorce”, 88 Yale Law Journal 950 (1979).

17) 오히려 그 반대였다. 민법 제840조는 1946년 개정 일본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1946년 개정 일본민법의 입법자는 -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 무책주의의 이혼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島律一郎・阿部 徹 編集 新版 注釋民法(22) 親族(2) (2008), 348-351면(阿部 徹).

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개념이 좁게 해석되었다.

앞서 언급한 규정들은 점차로 개정되어갔다. 1977년 개정 민법 제830조 제2항은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하였다(지분비율은 50:50이 된다).¹⁹⁾ 1990년 개정 민법 제833조는 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그 비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정해진다). 같은 개정으로 부부의 동거장소도 부부가 협의하여,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990년 개정 민법 제826조 제2항). 나아가 친권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의 방법에 관하여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법 제909조 제2항).

이 모든 개정은 양성평등의 점진적 실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²⁰⁾ 1948년 제정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이미 혼인과 가족생활이 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1960년 제정 민법은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무시하였다.²¹⁾ 그러나 여성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를 규정은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당하며, 심지어는 위헌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²²⁾ 이혼법도 바뀌었다. 1990년 개정으로 이혼하는 부부에게 사실상의 혼인(부부

18)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1971. 3. 23. 선고 70므41 판결;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대법원은 이 법리의 근거는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내지 금반언(禁反言)이 그 근거라고 이해되고 있다.

19) 이 규정 내지 그 개정의 실무상 의의는 크지 아니하다. 소유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 등기·등록제를 취하고 있고, 채권의 권리자, 즉 명의인은 계약해석의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사실증명이 아닌 법적 구성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문제되는 재산은 대체로 그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이다(가령 유체동산). 물론 이 규정의 이론적 및 이념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20) 양창수, “가족관계의 변화와 친족법”, 민사판례연구[XVIII](1996), 490면 이하, 502면 이하; 윤진수,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법경제학연구 제9권 제1호(2012), 37-38면; 이동진(주 15), 510-511면.

21) 이 점은 1960년 제정 민법의 입법자들도 명확히 의식하고 있었던 바이다. 민법 초안의 심의과정 중 상당부분이 바로 이 점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헌법상 양성평등의 요청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조화되지 아니하다거나 1960년은 양성평등을 완전히 실현하기에 시기상 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결국 관철되었다. Yune Jinsu, “Tradition and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Law”, 5(1) Journal of Korean Law 194, 197-199 (2005); 양창수(주 20), 487-490면.

22) 헌법재판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족법 규정에 대하여 위

공동)재산, 즉 명의에 관계없이 혼인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990년 개정 민법 제839조의2). 아울러 법원도 재판상 이혼의 요건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금하는 법리에 대한 일련의 예외가 인정되었고,²³⁾ 심지어 이러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종전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아니하게 되었다.²⁴⁾ 둘째, 일반적인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보다 너그럽게 해석하였다.²⁵⁾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가족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이 초래한 결과이다. 1990년 개정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909조에서도 드러나듯이, 부(夫)의 권한과 책임을 폐지함으로써 생긴 틈은 부부간 협의로 메워졌다. 그리하여 가족법상 혼인관념 내지 혼인 이해가 형식화되었다. 이제 법은 어떤 가족 단위와 부부관계의 형성과 변경을 이해 당사자에게 맡기고 부부가 그러한 협의에 이르는 과정만을 규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공적 제도에서 당해 혼인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협의체로 옮겨가게 된다.²⁶⁾

앞서 언급한 원칙들의 우열이 개정 국적법에서 변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처가 전업주부로 가정 내에 머무르고 전통적인 혼인관념이 유지되는 한, 내국인과 혼인하였다니 혼인이해가 형식화되었다. 이제 법은 어떤 가족 단위와 부부관계의 형성과 변경을 이해 당사자에게 맡기고 부부가 그러한 협의에 이르는 과정만을 규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공적 제도에서 당해 혼인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 협의체로 옮겨가게 된다.²⁶⁾

현결정을 해왔다. 가족법 발전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는, Yune Jinsu(주 21) 참조.

²³⁾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위 판결들에서 인정된 예외는 첫째, 피고도 이혼을 원함이 명백한 (그러나 이 혼을 원하는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둘째,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 셋째, 원고의 책임이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경우이다.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1판, 2013), 193-196면.

²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김주수·김상용(주 23), 192-193면.

²⁵⁾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1966. 4. 26. 선고 66므4 판결과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1991. 1. 11. 선고 90므552;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을 비교해볼 것. 이러한 이혼사유는 일반조항이므로 가치관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조항의 기능에 관하여는 이동진, “불륜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유증과 공서양속”, 비교사법 제16권 제4호(1996), 3-7면.

²⁶⁾ 이동진(주 156), 511-512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준 내지 규율이 필요해진 것이다.

(3) 가족법 및 형법상 가장혼인

다른 나라의 가족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도 민사혼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률상 부부관계를 창설하고자 하는 남녀는 혼인에 합의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12조). 다만,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앞에서 혼인합의를 하거나 혼인의사를 표시하거나 혼인식을 거행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단지 혼인을 신고하면 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법제는 일본민법에서 유래한다(신고주의).

이에 따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²⁷⁾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두 쟁점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혼인합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무효인 혼인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혼인합의의 정의 내지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 견해는 유효한 혼인의 요건으로서 혼인합의란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 즉 전형적으로 동거, 소득과 생활비용의 공유 내지 분담, (성적인 의미의) 부부관계, 친척 및 친구 등과의 관계형성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육체적 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가리킨다고 한다(실질적 의사설).²⁸⁾ 그러나 다른 견해는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이상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고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을 할 의사는 필요하지도 아니하고 심사할 것도 아니라고 한다(형식적 의사설).²⁹⁾

대법원은 앞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오직 자녀가 혼외자임이 알려지는 경우 혼담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준정(準正)을 위하여 그 부모가 한 혼인신고나³⁰⁾ 오직 일방이 국민학교 교사직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혼인은³¹⁾ 무효가 되었다.

27) 이 규정 또한 일본민법에서 유래한다.

28) 김주수·김상용(주 23), 83-85면; 이화숙,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 의사와 신고”, 민사법학 제36호 (2006), 627면 이하.

29)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1967), 753면.

3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므23 판결. 이 사건이 대법원이 가장혼인 문제를 다룬 첫 번째 사건인 것 같다. 한편,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므26 판결은 양 당사자가 혼중자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한 혼인도 무효가 아니라고 한 바 있으나, 이 판결은 판례의 경향과는 동떨어진 예외적인 판결로 보인다. 이 판결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본다.

이들은 가장 혼인으로서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첫째, 이러한 판례가 형성되었을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정형화된 전통적 가족에 기초한 구체적 실질적인 혼인모델이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부부가 동거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³²⁾ 또한 그 결과 자녀도 가졌다. 부(夫)는 가정 밖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와 자녀를 돌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형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혼인으로 승인할 필요도 크지 아니하였다.

둘째, 이른바 사실혼에 관한 판례법리가 유효한 법률혼의 요건으로서 혼인합의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사실혼은 지속적 동거관계의 일종이지만 법률혼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의 당사자들을 이른바 준혼(準婚)이론으로 보호하려고 하였다. 본래 법률혼 당사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법적 보호 중 일부는 - 법률혼에 준하는 - 사실혼 당사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내지 유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이론은, 혼인합의를 포함하여, 신고를 제외한 법률혼의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³³⁾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의 혼인의사는, 사실혼에는 신고와 같은 형식이 없으므로, 부득불 실질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혼 개념은 어떠한 한정기능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혼 보호를 위한 혼인의사의 실질적 이해가 다시 법률혼의 요건으로서 혼인의사의 이해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두 학설이 대립한다. 민사소송법학에서 다수설은 무효인 혼인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고 혼인무효소송(가사소송법 제2조)을 통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즉, 취소되는) 것이라고 한다.³⁴⁾ 혼인무효사건은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혼

³¹⁾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62, 63 판결.

³²⁾ 배우자 강간이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도 여기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는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³³⁾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3 판결. 이 판결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각 당사자의 혼인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혼인공동생활 및 그것이 사회관념과 가족질서에 비추어 부부공동생활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일 것을 (보호되는) 사실혼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³⁴⁾ 우리 가족법은 무효인 혼인 이외에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을 인정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혼인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만 이러한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 민법 제816조, 제824조.

인무효판결은 대세효률을 가지기 때문이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³⁵⁾ 가족법학에서 다수설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무효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고 한다.³⁶⁾ 대법원은 뒤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³⁷⁾

그 결과 가장혼인을 형사 처벌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형법 제228조, 제229조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사실과 달리 기재되게 하거나 그와 같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범죄는 본질적으로 형법 제227조가 정하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일종이다. 공정증서원본에 불실기재를 하는 것은 공문서인 공정증서원본을,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통하여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모든 공문서의 허위작성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중 공정증서원본의 허위작성만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⁸⁾ 그 밖의 모든 요건은 충족되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판건은 가장혼인을 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실, 즉 허위인가 하는 점이다. 계약법상 유사사건, 즉 부동산의 가장양도를 등기한 경우와 달리³⁹⁾ 대법원은 이것이 허위이고, 따라서 이 규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혼인신고 자체가 형법 제229조의 의미에서 행사에 해당하고, 같은 규정 위반이 된다.⁴⁰⁾ 그리하여 가장혼인의 당사자는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2. 이민법, 가족법, 형법상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온 법리의 의도치 않은 결합물로서 이주혼인에 대한 규율

(1) 이주혼인에 대한 규제에 있어 이민법, 가족법, 형법의 상호작용

³⁵⁾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제7판, 2014), 196-197면.

³⁶⁾ 김주수·김상용(주 23), 113-114면.

³⁷⁾ 대법원 1956. 12. 22. 선고 55다399 판결.

³⁸⁾ 이들 규정이 없었다면 모든 허위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을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이 형법 제227조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2007), 590면.

³⁹⁾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⁴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1996. 11. 22. 선고 95도2049 판결. 이들 판결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본다.

우리의 이주혼인에 대한 규제체계는 이민법, 가족법, 형법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부과된 규제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이민법은 내국인이나 영주권자와 혼인한 외국인에게 일정한 법적 혜택을 준다. 이러한 혜택도 혼인의 법률효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한 혼인의 요건으로 혼인의사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대법원은 이주만을 위한 혼인을 일종의 가장혼인으로 보아 처음부터 당연 무효라고 한다.⁴¹⁾ 사실 오늘 날 실무상 문제되는 가장혼인의 유일한 범주가 이주혼인인 듯하다. 준정을 위한 혼인이나 직업 유지를 위한 혼인은 더는 문제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만이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일방은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던 경우도,⁴²⁾ 이때에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할 수 있고,⁴³⁾ 악의의 유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혼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족법상의 접근은 이민법상 규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이민법, 특히 1998년 개정 국적법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다퉈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당사자들이 규정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혼인을 유지하였는지 여부인데,⁴⁴⁾ 이는 가장혼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매우 유사하다.⁴⁵⁾ 어떤 혼인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 간이귀화나 F-4 사증의 요건으로서 혼인은 유효한 것을 뜻할 것이므로, 귀화나 사증발급 요건도 이미 충족되지 아니하게 된다. 혼인의사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우 다른 요건은 부당한 이주신청을 배제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 역으로 이러한 실무가 확립되고 나면

41) 주 39의 판례 참조.

4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43) 민법 제816조 제3호(혼인의사표시의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개입한 경우를 혼인취소사유로 듣다).

44)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구합23372 판결; 2009. 12. 3. 선고 2009구합29097 판결; 2009. 12. 4. 선고 2009구합22331 판결; 2009. 12. 31. 선고 2009구합24085 판결; 2010. 1. 15. 선고 2009구합32000 판결; 2010. 2. 17. 선고 2009구합130950 판결; 2010. 4. 2. 선고 2009구합37746 판결; 2010. 7. 23. 선고 2009구합150442 판결; 2010. 9. 2. 선고 2010구합17618 판결; 2010. 9. 9. 선고 2010구합7994 판결.

45) 가령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42052 판결.

이제 혼인의사가 가족법뿐 아니라 귀화나 사증발급 허가를 통제함으로써 이민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어 그 판단기준을 완화하기가 어려워진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체제 하에서 이주혼인에 대한 규율이 검사의 손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혼인을 혼인으로 신고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 제229조 위반의 범죄이다. 1998년 국적법 개정 전에는 이것이 정부가 이주혼인에 개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998년 개정으로 한국 국적의 당연취득이 귀화신청 및 귀화허가로 대체되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이미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국적법 제6조, 제21조)를 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되었다(국적법 제22조, 위임). 그리하여 그는 (1)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2) 신청자에게 일정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3) 거주지를 현지 조사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⁴⁶⁾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가장혼인 사실을 적발한 공무원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가장혼인임에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남녀는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주혼인에 관한 재판례의 다수가 민사가 가사가 아닌 형사나 행정사건이라는 점만⁴⁷⁾ 보아도 이러한 종류의 혼인에 대한 규율이 행정부, 특히 검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장혼인의 각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혼인무효판결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다.⁴⁸⁾

(2) 이주혼인에 관한 판단의 법적 기준과 사실적 고려요소

⁴⁶⁾ 외국 주재 외교공관의 장도 마찬가지로 사증 신청자가 실제로 혼인의사를 갖고 있는지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및 한국어 능력, 한국 내 주거장소의 준비상황 등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⁴⁷⁾ 주 39 및 주 44의 판례들 참조.

⁴⁸⁾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직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혼인은 가장 혼인으로 가족법상으로는 무효이고,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이민법상으로는 이주요건상의 특혜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것이 곧바로 이주혼인에 관한 규율이 엄격함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이 점은 주로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거와 사실을 다루는 행정부 공무원, 검사 또는 법관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혼인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혼인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정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문제되는 당사자들의 내심의 사실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들의 내심의 의도는 관찰할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 게다가 혼인의사는 통상 사회적 실재로서 혼인관계를 지향하지, 법률혼의 법률효과를 지향하지 아니한다. 부부가 혼인의 법적 의미를 알고 혼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이다. 그들은 그 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혼인함으로써 그들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의도 자체가 모호할 수도 있다. 혼인은 포괄적인 장기간의 관계이므로, 혼인의 구체적 조건 내지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합의를 하는 것은 대다수의 부부에게 지난한 일이다. 그 결과 혼인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그들의 혼인이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는 가장 혼인이라는 점에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혼인합의의 유무는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interpretation)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구성(construction) 문제에 가깝다. 행정부 공무원, 검사 및 판사로서는 혼인 당사자의 의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단서를 모으는 수밖에 없다. 다른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성 또한 불가피하게 구성자의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구성자, 특히 법관이 어떠한 태도 내지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물론 그들의 태도를 쉽사리 일반화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판단은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생점을 어느 정도 자세히 다룬 재판례들을 살펴보면, 법관들이 이주혼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때에 이에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종종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례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이다. 위 사건은 원고 한국인 부(夫)가 피고 필리핀인 처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화

인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 함께 입국하였는데, 그 후 약 한 달 만에 피고가 자신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결혼하였고 돈 벌려 가야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채 가출하였다. 이에 원고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피고는 입국 후 약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 가출 직전에도 원고와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메모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하여야 할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나가야 할지를 두고 갈등하다가 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이유로 제시된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세심하게 피고를 도왔다; 피고는 불과 한 달 만에 가출하였다; 피고가 쓴 메모에는 피고가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원고와 결혼한 이유이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어 원고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자 곧 가출하였다; 한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와 연락해온 피고의 사촌도 피고는 필리핀에 있는 피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거부로 동거기간 중 부부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이 열거한 요소들은, 마지막 요소, 즉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당해 혼인이 가장 혼인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기껏해야 피고가 원고와 결혼할 당시 경제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뿐인데, 이것이 반드시 피고가 진정한 혼인관계도 의도하였을 가능성성을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이주혼인에서는 가장 혼인의 증명도가 특별히 낮아지거나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혼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는 결론을 시사하게 된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재판례는 그 밖에도 여럿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 선고된 한 판결은⁴⁹⁾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화허가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1999년 한국에 입국하여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수년 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였다; 원고는 혼인을 하고 한국에서 출국한 지 6개월 만에 내국인의 외국인 처(F-2)로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사증 유효기간 만료를 피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

⁴⁹⁾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7994 판결.

고의 여동생이나 원고의 한국인 부(夫)의 어머니와 형제 중 이들의 혼인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한국인 부(夫)의 친구들을 알지 못한다; 원고의 부(夫)는 일주일 중 2, 3일만 서울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러 지방에 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들이 정신적 및 육체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아니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다른 판결도⁵⁰⁾ 매우 비슷한 이유를 들어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도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부부가 교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원고가 한국인 부(夫)의 형제자매를 알지 못한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한국인 부(夫)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중국인 전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면 원고가 중국인 전 남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딸에게 혼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한국인 부(夫)도 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원고가 결혼 2주년을 세 달 앞두고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2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 다른 판결은⁵¹⁾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귀화허가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한국 거주기간의 대부분이 G-1 사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와 그의 한국인 부(夫)는 원고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5개월 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들의 교제경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G-1 사증 대신 F-2 사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남편이 가출하였다면서 이를 칠회한 바 있다; 원고가 (그 후 낸) 이혼소장에서 진정한 혼인을 원하고 돈이나 이주를 위하여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쓴 바 있음에도, 원고가 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증 유효기간 만료를 피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혼인하였고, 그 남편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인과 혼인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가능한 한 오랫동안 - 적어도 2년간은 - 동거하고 일시적으로라도 떨어져 지내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간 중에는 이혼청구의 소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

⁵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57252 판결.

⁵¹⁾ 서울행정법원 2010. 5. 26. 선고 2010구합498 판결.

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혼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서로의 가족 및 친지와 교제하고 지내야 한다. 아울러 부부관계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부는 이러한 점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 검사 또는 판사가 이러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부나 그들의 주거를 조사할지도 모른다.

III. 검토

1. 실체적 측면

(1) 이주 혼인에서 이해상충 해결의 어려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주 혼인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주 혼인 자체가 드물었을 뿐 아니라, 그 규율에 관하여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일도 드물었다.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점부터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한다.

먼저, 국가는 받아들일 만한 이민과 그렇지 아니한 이민을 가릴 권한이 있다(이민 통제에 관한 국가의 이익).⁵²⁾ 역사적으로 명백한 바이지만, 국적(및 시민권), 즉 어떤 사람의 특정 국가에의 귀속은 국가가 국민{전통적으로는 신민(臣民)}으로서 (복종)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 기준이었다.⁵³⁾ 오늘날 국가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특정 국가가 누구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는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점점 더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⁵⁴⁾ 게다가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민으로서 권리와 권한에는 투표권자나 후보자, 즉 대표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하여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한 정치적 공동체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안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나라는 외국

⁵²⁾ Ping v. U.S., 130 U.S. 581, 609 (1889); Oceanic Stream Navigation Co. v. Stranahan, 214 U.S. 320, 340 (1909); Abrams, "Immigration Law and the Regulation of Marriage", 91 Minnesota Law Review 1625, 1638 ff. (2000)

⁵³⁾ 명순구·이철우·김기창(주 6), 7-35면; 석동현(주 8), 15-16, 28면.

⁵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의 요건으로 생계능력을 요구하고 취업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의 이주신청을 거절할 권한이 있고, 또 그 국민은 받아들일 책임이 있으며 그를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⁵⁾ 대부분의 국가는 선별적 이민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자국(自國)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할 이민자, 즉 간단히 말하여 자국(自國)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호한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민과 귀화를 좀 더 너그럽게 허용하는 경우조차도 이민자가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완전히 통합될 것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의 가족결합에 대한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가족결합권을 언급한 바 없기는 하나,⁵⁶⁾ 헌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몇몇 결정 - 그 대부분이 이주혼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건이다 - 이를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으로 다루고 있다.⁵⁷⁾ 국내적인 수준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의 침해가 문제될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혼인을 한 경우, 내국인이 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내국인과 가족을 이룬 외국인에게도 이민이 허가되어야 한다.

평등하고 자율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사생활도 문제가 된다. 전자(前者)는 같은 헌법 조항(헌법 제36조 제1항)이 직접 보호하는 바이고, 후자(後者)는 부부관계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된다.⁵⁸⁾ 혼인과 가족을 이민허가심사의 실체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 부부생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지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족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혼인이 법적으로나 사회적 실재로서나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었을 때에는 국가의 이민통제에 관한 이익과 개인의 가족결합에 대한 이익 사이의 잡재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회피될 수 있었다. 혼인이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고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기 어려웠던 이상 혼인 자체가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사회에의 통합과 한국에 대한 충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혼인 자체가 아주 내지 귀화를 허가할 만한 특정한 상황을 담

⁵⁵⁾ 석동현(주 8), 26-28면.

⁵⁶⁾ 성낙인, 헌법학 (제13판, 2013), 801-804면.

⁵⁷⁾ 국가인권위원회 2003. 1. 13.자 02진인1428 결정; 2003. 9. 8.자 03진인931 결정; 2004. 8. 16.자 04진인1581 결정. 또한 Rae, "Alienating Sham Marriages for Tougher Immigration Penalties: Congress Enacts The Marriage Fraud Act", 15 Pepperdine Law Review 181 (1988) 참조.

⁵⁸⁾ 성낙인(주 56), 635면.

보하므로 당해 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식으로 가족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회피될 수 있었다.⁵⁹⁾

그러나 가족법상 혼인에 대한 이해가 형식화되고 사회에서 혼인의 양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잠재적 갈등도 현실화되었다. 이제 혼인만으로는 더는 내국인과 혼인한 사람에 대한 이주허가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형식화된 혼인관념이 가족법과 이민법 모두에서 관철된다면, 혼인관계상 평등과 자율의 진전은 유지될 것이고,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회피될 것이며, 가족결합도 위협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국가의 이민통제 이익이 전적으로 무시되게 된다. 이는 잠재적 이민자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제혼인을 이용하게 하여, 혼인 일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민통제를 포기할지 여부는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로서 적절한 대의기구에 의하여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오직 이민만을 또는 주로 이민을 목적으로 한 혼인이 가족법과 이민법 모두에서 승인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이민통제 이익은 보호되겠지만, 그 대신 혼인에 있어 평등과 자율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취가 - 적어도 부분적으로 - 무력화되고, 전통적인 혼인 이해가 재차 힘을 얻게 되며, 부부의 사생활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러한 가족법의 퇴보와 사생활 침해가 목격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혼인의 당사자들로서는 행정부 공무원이나 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혼인생활의 모습을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형태로 꾸밀 유인이 있고, 그들의 부부 사생활, 가령 서로의 친척 및 친구와의 관계나 성생활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지 여부는 한국인들 사이의 혼인이 가장 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혼인이 가장 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

(2) 가족법과 이민법의 분리, 보다 형식화된 접근

⁵⁹⁾ 다른 나라의 이민법도 과거에는 내국인과 혼인하기만 하면 외국인 처에게 곧바로 그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였다. 1982년 미국 외인 및 국적법(U.S. Code Title 8 - Aliens and Nationality) 제1152조; 1804년 프랑스 민법 제12조; 1913년 독일 국적법 제6조; 1965년 오스트리아 국적법 제9조; 1952년 스위스 국적법 제3조.

이러한 딜레마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배려된 대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

첫째, 가족법과 이민법, 혼인의 유·무효와 이민허가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⁰⁾ 이민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혼인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분리하지 아니하는 한 법관으로서는 이민법적인 관점에서 의심스러워 보이는 혼인을 무효로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을 막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무효인 혼인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이혼법의 엄격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일부 부부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라는 구성을 통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이혼법이 개혁됨에 따라 이러한 개념의 실천적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이제는 가장혼인을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혼인이 없는 경우와 깨진 경우 두 상황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였다. 판례가 혼인의 법률효과 중 일부를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항상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단지 혼인의 법률효과 중 일부만을 배제하기로 하는 바로 그 합의만을 무효로 한다고 보고,⁶¹⁾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하여 소급효를 부정하는 민법 제139조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혼인의 명시적 묵시적 소급적 추인 법리를 발전시킨⁶²⁾ 까닭이 바로

60) 다수의 미국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이주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민법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혼인이라 하더라도 가족법(보통법)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가족법에 관한 In re Appeal of O'Rourke, 310 Minn. 373, 246 N.W.2d. 461 (1976); Mpiliris v. Hellenic Lines, Ltd., 323 F.Supp. 865 (S.D. Tex. 1970)와 1986년 U.S. Code Title 8 외인 및 국적 제1151조; Abrams(주 52), pp. 1668 ff.; Lynskey(주 5), pp. 1094 ff. 비교. 스위스도 이민법상 이민허가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2000년 개정으로 이주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120조 제4호를 대체 없이 삭제하였다. Geiser und Lüchinger, zu Art. 105 N. 15-16 in Basler Kommentar zum Zivilgesetzbuch I (2. Aufl., 2002).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가족법 쟁점과 이민법 쟁점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isfeld, Die Scheinehe in Deutschland im 19. und 20. Jahrhundert (2005), S. 219 ff. (독일); Murat, "La lute contre les mariages de complaisance se poursuit", J.C.P. 1993, I, 3639 n° 4 (프랑스).

6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므26 판결(주 30). 독일에서는 이 점, 즉 혼인의 효력을 혼인의 요건으로 하면 혼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평가 절하될 수 있다는 점이 혼인의 효력 중 일부를 배제하고 한 혼인도 가장혼인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정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논의의 개관은 Eisfeld(주 60), S. 190 f.

62)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또한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도 참조. 마지막 판결은 동거하지 아니하고 왕래만 하기로 하는 합의도 실질적 혼인의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혼인이 가장 혼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장 혼인이라는 결론 이외의 해석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가장 혼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 혼인의 처리를 이혼법에 맡겨야 한다.⁶³⁾ 부부가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당해 혼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⁶⁴⁾ 이민허가의 요건이 혼인의 유·무효에 연동되어 있고 이민허가를 통제할 다른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밖에 혼인에는 여러 효과와 혜택이 결부되어 있다. 그들 모두가

63) 김영신, “‘혼인의사’의 의미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2012), 351-355면 (신중한 실질적 의사설). Hepting, “Das Eheschließungsrecht nach Reform”, FamRZ 1998, 713, 720 은 형사증거법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 므574 판결과 비슷한 사안에서 가장 혼인을 인정하지 아니한 스위스 연방대법원 BGE 98 II 1도 참조. 그 밖에 각국에서 쓰이는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European Commission(주 5), pp. 31 ff. 참조.

64) 이러한 관점에서 일방 당사자만이 혼인 공동생활을 행성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타방은 그려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비진의 표시, 심리 유보)는 가장 행위(통정허위 표시)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혼인이 혼인 의사사를 갖고 있었던 일방의 인식과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된다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 당사자도 혼인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혜택과 보호를 잃게 된다. 혼인하였다고 믿은 당사자의 보호가 모호한 기준에 터 잡은 혼인의 승인 거부보다 덜 중요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유효한 혼인의 요건으로 혼인 의사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강제 혼인의 방지인데, 이러한 기능은 이미 혼인령(18세 이상, 민법 제807조), 사기 및 강박(민법 제816조 제3호; 판례는 사기, 강박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혼인 의사의 흠풍으로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기, 강박으로 처리할 수 있다)으로 달성되고 있다. 국제 혼인에서 혼인의 효력 요건으로서 각자의 혼인 의사라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국제사법 제36조,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445-447면; 석광현, “한국법원에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계약법, 불법 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제51권 제3호(2010), 209-213면], 형식적 의사설을 취하는 나라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도 덧붙일 수 있다. 미국(앞의 주 60),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다만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 가장 혼인 일반이 아닌 - 이주만을 목적으로 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은 가장 혼인 일반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사실상 이주 혼인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민법 제1314조 제2항 제5호; 오스트리아 혼인법 제23조; 2000년 개정 전 스위스 민법 제120조 제4호; Diekmann, *Familienrechtliche Probleme sogenannter Scheinehen im deutschen Recht unter Einbeziehung des österreichischen und schweizerischen Zivilrechts* (1991) 참조. 실질적 의사설을 취하는 나라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 판례는 Cass. civ. 1er 20. novembre 1963, D. 1963, S. 465 (Appietto 사건) 아래로 혼인법 내의 목적 중 일부만을 추구하는 가장 혼인은 유효하나 혼인법 외의 목적을 추구하는 가장 혼인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므로, 이주 혼인도 무효로 본다. 상세는 Fulchiron, “*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à raison du mariage*”, J.Cl.-droit international privé français, Fasc. 502-60 (1995).

이민통제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민법상의 효과 내지 혜택을 제외한 그 밖의 혼인효과 내지 혜택은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⁶⁵⁾

이러한 접근이 초래하는 위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한다. 법원은 당해 사건의 실질적인 내지 진정한 쟁점이 이민통제임을 의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적인 쟁점은 오직 혼인의사의 존부이므로, 이러한 고려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부가 혼인신고 전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관찰할 수도 검증할 수도 없으므로, 법관은 혼인 전후의 관찰되고 증명된 여러 단서에 터 잡아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⁶⁶⁾ 이때 실제로 혼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혼인신고 후 마음이 바뀐 경우와 처음부터 혼인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경우를 구별하기란 쉽지 아니하다. 요컨대 법관에게 혼인이 가장 혼인인지 여부를 가릴 사실적 내지 증명상의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혼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사실적 기초 내지 증명의 부족을 일방 또는 타방에게 유리한 추정 또는 그들 나름의 감으로 보충하게 마련이고, 사실 그 수밖에 없다. 앞 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 법원은 마지막 접근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가족에 관한 전통적인 상(像) 내지 개념, 그리고 때로는 검증된 바 없고 근거도 없는 외국인,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매개하는 창이 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하게 스스로 혼인이 가장 혼인인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도 있다. 이러한 -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 경우 법관의 다양한 혼인 양태와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는 그들 자신에 의하여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도 검증되지 아니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통제가 은밀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이기까지 한 통제보다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통제는 가족법적 쟁점(가장이혼)과 이민법적 쟁점(이민자격)을 분리하여 이민신청이 이민법상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여부를 정면에서 심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가족법과 이민법을 분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이민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관에게 주어지는 경우, 그들이 부적절한 이민시도를 막는 역할과 그들 자신

⁶⁵⁾ 서울지방법원 1996. 7. 12. 선고 96노3403 판결. 이 판결은 형식적 의사설을 따랐지만, 그 논증은 신중한 실질적 의사설을 따를 때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⁶⁶⁾ Diekmann(주 64), S. 173.

의 결정이 적법한지, 혹여 편견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엄격하게 점검하는 역할을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를 두 역할은 반대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前者)를 후자(後者)에서 분리하여 그 중 고도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전자(前者)를 정부 공무원(출입국관리소)에게 넘긴다면, 법관은 후자(後者), 즉 정부 공무원이 한 처분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기 쉬워진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가족법과 이민법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아직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남아있다. 내국인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이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내국인과 혼인하였다 하여 언제나 또는 그것만으로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해주거나 귀화허가를 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부부의 가족결합권도 혼인의 구체적인 양태에 의존한다. 예컨대 부부가 결혼하되 별거하기로 한 경우,⁶⁷⁾ 가족결합이 심각하게 문제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혼인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에 관하여 솔직하게 보고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혼인이 정말 가족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이나 귀화허가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 사생활에 대한 조사를 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허가를 좀 더 형식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정상적인” 혼인을 요구하기보다는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늘리고 사증 발급 단계에서 국제혼인의 목적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줄어들수록, 국적 취득의 비용 내지 부담이 커질수록, 이민만을 위하여 국제혼인을 악용할 가능성이 줄고,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의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이다.⁶⁸⁾ 그 밖에 부부의 사생활과 개인적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조사는 명시적이고 보다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

⁶⁷⁾ 중국 여배우 탕웨이는 한국 영화감독 김태용과 결혼하되 한국에 살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⁶⁸⁾ 이 점이 많은 나라에서 내국인의 배우자에게 주어진 이민법상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 해온 까닭 중 하나이다. 1969년 개정 독일 국적법 제9조(및 그 제6조의 삭제); 1973년 프랑스 국적법 제37조 및 제37조의1; 1983년 개정 오스트리아 국적법 제11조의a, 1986년 개정 미국 외인 및 국적법 (혼인사기방지법) 제1186조의a, 1990년 스위스 개정 시민권법 제15조(및 그 제3조의 삭제, 1982년 연방헌법 개정).

다.⁶⁹⁾

2. 절차적 측면

(1) 의사소통의 왜곡

현행 이주혼인 규제 체계의一 또 다른 문제는 검사가 절차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주혼인은 가장행위로서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검사는 가장혼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외국인을 조사하여 기소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 공무원도 또한 현지조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접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이 잘 보여준다.⁷⁰⁾ 한국인 결혼중개업자 甲은 한국인 남성 乙에게 300만 원을 받고 가장혼인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 자신은 외로운 사람이고 진정한 혼인을 원하며, 300만 원은 자신에게 그리 큰돈은 아니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甲은 돈을 받지 않으면 중개를 해줄 수 없으니 일단 돈을 받고 그 돈을 처를 위해 쓰면 되지 않느냐고 乙을 설득하였고, 乙이 이에 응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자 중국인 여성 丙을 乙에게 소개해주었다. 乙은 중국에서 丙과 혼인한 뒤 함께 한국에 왔다. 乙과 丙은 같은 집에 살았으며 부부관계도 있었다. 물론 丙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직장을 구하여 돈을 벌었다. 그 돈(중 일부)은 그들의 생계에 보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乙은 친척들에게 이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약 1년 정도 뒤 그들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甲, 乙, 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교사(형법 제31조)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1심 중 甲과 丙에 대한 유죄판결(乙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⁶⁹⁾ De Armas, "For Richer or Poorer or Any Other Reason: Adjudicating Immigration Marriage Fraud Cas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15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 the Law 743, 758 ff. (2007); Diekmann(주 64), S. 17. 또한 스위스 시민권법 제15조의c도 참조

⁷⁰⁾ 필자는 이 판결 당시 재판부의 일원이었고, 주심으로 판결의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본 문에 적은 사실 중 일부는 필자의 기억에 의한 것이다. 위 사건에 관한 상세는 김영신(주 60), 353-354면 참조.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및 다른 하급심 법원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지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들 사이에는 부부관계가 있었고 같은 집에서 1년 남짓이나 동거하였다. 丙은 심지어 자신이 번 돈을 생활비용에 보태기도 하였다. 丙이 乙과 결혼한 동기들 중 돈을 벌고자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丙이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실질적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인다.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옳은지 여부가 아니라 왜 검사는 이들을 기소하였고 제1심은 유죄판결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에 명확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 남편 乙이 甲에게 가장 혼인은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그들의 혼인이 가장 혼인이었다고 증언하였다는 점이다.⁷¹⁾ 그가 제시한 주된 이유는 그가 혼인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고, 丙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 전형적으로 가장 혼인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乙은 가장 혼인의 법적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가장 혼인과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후 곧 파탄된 혼인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확한) 조언도 이러한 오해에 기여하였음이 분명하였다. 반면 丙은 수년 전 중국에서 이혼하여 외로운 상태였고 진정한 혼인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였으며 혼인을 유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및 乙의 경제적 무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丙은 가장 혼인과 유효한 혼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국어 능력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만의 고유한 사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혼인의 한국인 일방은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진다. 앞서도 설명한 바이지만 법원이 가장 혼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쓰는 기준은 미묘하다. 형사 소송절차는 피고인이 재판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권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법정 내 의사소통을 왜곡할 위험을 갖고 있다. 외국인, 특히 법정 내에서 쓰이는 언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너그러운 형사소송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

⁷¹⁾ 乙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더는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었다.

서는, 교육의 부족, 낮은 경제적 지위 및 언어능력의 부족이 절차가 부당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이 규제 체계의 단점들을 증폭시킨다.

(2) 가장 혼인의 비범죄화

이러한 위험은 가장 혼인을 비범죄화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다.⁷²⁾ 이는 몇몇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손쉽게 달성될 수 있다.

무효인 혼인을 신고하는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어야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 범죄의 요건 중 “불실”, 즉 허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였는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등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 것은 맞는지 등 오직 사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신청이 사법적 관점에서 유효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가족법적인 관점에서 무효인 가장 혼인을 신고하는 것도 허위가 아니라는 해석도 충분히 주장될 수 있다.⁷³⁾ 실제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부동산을 가장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는 가장행위로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이 양도에 관하여 등기한 사건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양 당사자가⁷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이상⁷⁵⁾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지 아니하고, 계약 및 등기가⁷⁶⁾ 무효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혼인에서 “불실”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이 범죄에 관한 어떤 다른 판례와도 모순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현재 판례가 이 범죄를 두 상황에서 해석하는 방

⁷²⁾ 국제혼인을 적용하여 이주허가를 받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Rae(주 57), pp. 193 ff.(U.S. Code Title 8 외인 및 국적 제1325조, 미국); European Commission(주 5), pp. 39 ff.(유럽). 그러나 이를 규정은 많은 나라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종종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가령 Obergericht Zürich SJZ 1982, 129; Lüderitz, "Mißbräuchliche Personenstandsänderung oder spouse leasing in Germany", in Festschrift für Oehler zum 70. Geburtstag (1985), S. 498.

⁷³⁾ 서울지방법원 1996. 7. 12. 선고 96노3403 판결.

⁷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양도인-소유자와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

⁷⁵⁾ 각주 39의 판례 참조

⁷⁶⁾ 계약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면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 양도도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된다(물권행위의 유인성).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식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⁷⁷⁾

가장혼인이 형법 제228조, 제229조 위반이라는 명제는 가장혼인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임을 전제한다.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고 단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면 “가장혼인을 혼인으로 신고하는 것은 신고 당시에 불실/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물론 대법원과 가족법학의 다수설은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목적 내지 기능은 혼인무효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혼인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이 혼인 당사자, 후견인 및 일정한 범위의 친족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가사소송법 제23조),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제기하지 아니한 사람도 - 다른 소송에서 -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⁷⁸⁾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사람의 상속권이 무효인 혼인에 기초하고 있어 그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다투 수 있다.⁷⁹⁾ 그러나 이러한 무효인 혼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장혼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첫째, 이러한 선결문제로 다투 수 있게 해주는 구성은 단지 다른 사람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적 이익 내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사가 혼인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갖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⁸⁰⁾ 판례는 이러한 한계를 가장혼인을 범죄화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에 터 잡아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우회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로 하는 법적 구성의 당초의 기능과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것이 무효인 혼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소급적 추인 법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행위로 무효인 혼인도 소급적으로 추인될 수 있다. 이 법리의 목적 내지 기능에 비추면 가장혼인이어도 소급적으로 추인한 이상 형사 처벌을

⁷⁷⁾ 석동현,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연구* [VI](1998), 339-341면.

⁷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⁷⁹⁾ 각주 37의 판결 참조

⁸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는 검사 내지 관할 행정청이 가장혼인에 대한 혼인 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을 갖고 있다(독일 민법 제1316조, 스위스 민법 제106조, 오스트리아 혼인법 제28조, 프랑스 민법 제172조, 특히 오스트리아 혼인법은 이주혼인의 경우 검사만 원고적격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검사가 소를 제기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사실상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까지 하였다. BGE 77 II 193. 일반적으로 Dickmann(주 64), S. 138 ff. 및 160 f.

받아서는 아니 될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의 사정변경이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주려면 그 사정이 객관적 처벌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혼인이 유효하고 추인이 없을 것을 형법 제228조의 범죄의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객관적 처벌조건을 규정 없이 법관이 만들어낼 수도 없다.

둘째, 이 구성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예를 다시 보자. 피상속인이 그가 (가장)혼인으로 그의 (가장)배우자가 받게 된 혜택을 빼앗고 싶지 않아서 생전에 혼인무효소송을 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 당연 무효 구성은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한다. 즉, 이는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당사자를 충분히 존중하지 아니하는 해석이다. 그 결과 심지어는 가장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혼외자가 되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생긴다. 가족법 문헌에서 이러한 구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받아온 것도 이와 같은 흠 때문이다.⁸¹⁾

IV. 결론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국제혼인의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 중 상당부분은 이주를 위한 혼인, 즉 사증 발급이나 귀화 허가에서 일정한 특혜나 혜택을 얻기 위한 혼인이다. 우리 법은 과거 외국인 배우자, 특히 내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

⁸¹⁾ 김주수·김상용(주 23), 116면. 비교법적으로도 무효인 혼인도 무효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용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민법 제201조, 제202조, 1998년 개정 독일 민법 제1310조 이하, 오스트리아 혼인법 제27조 이하, 스위스 민법 제109조 Raymond, "Mariage - Demandes en nullité - Mariage putatif", Art.201 à 202 Fasc.120, J.Cl. - civil art. 201 à 202 Fasc.120 (2004); Wellenhofer, zu §1313 BGB Rn. 1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2013); Stabentheiner, zu §§29~31 EheG Rz. 6 ff. in Rummel (hrsg.) Kommentar zum Allgemein bürgerlichen Gesetzbuch 2. Band/4. Teil: EheG, KSchG (3. Aufl., 2002); Geinser und Lüchinger, zu Art. 109 N. 2 ff. in Balser Kommentar zum Zivilgesetzbuch I (Fn. 60). 미국 법원이 이주혼인이 무효라고 한 몇몇 사건은 모두 혼인무효소송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로 재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U.S. v. Rubenstein, 151 F.2d 915 (2d cir., 1945); Lutwak v. U.S., 344 U.S. 604 (1953); Faustin v. Lewis, 85 N.J. 507, 427 A.2d 1105 (1981). 선결문제에 관하여 무효 주장을 한 주 60의 사건들에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과 비교.

국인 처에게 이민법상 상당한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혼인에 대한 사회적 및 법적 이해가 바뀜에 따라 혼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혼인의 개념 범주가 확장되고 크게 형식화됨에 따라 혼인계약이 더는 배우자의 이민의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 법은 가족법과 형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한 몇몇 법리를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였다. 아주 혼인은 종종 가족법상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고 그 결과 우리 법상 혼인의 요건인 그 신고를 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였다. 이민법상 혼인에 부여된 특혜가 혼인의 유효성을 전제하는 이상 가장 혼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이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범죄인 이상 이 쟁점을 다루는 절차는 형사절차이고, 이 절차의 주도권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현대 가족법의 성취, 즉 가부장제와 기존의 성역할에 기초한 전형적인 혼인에서 벗어난 혼인의 자율과 평등을 무효화할 위험을 초래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의식되지도 아니한 저개발국가 출신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편견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이는 그 부부의 부부관계에 관한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위험은 혼인을 통한 이민시도를 범죄화함에 따라 증폭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고 있을지 모르는 편견을 바로잡을 기회를 빼앗기기 쉽다. 외국인 여성 종상당수가 한국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다.

상충하는 모든 이익을 완전히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보일지도도, 현재의 접근보다 더 나은 접근은 존재한다. 실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족법과 이민법, 즉 가장 행위를 이유로 하는 무효 여부의 판단과 이민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을 분리하고 이민요건을 더욱 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민통제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민통제의 적법성 통제는 법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혹 있을지 모르는 편견을 배제하는데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의 개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혼인을 통한 이민시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들 중 몇몇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지만, 그 중 일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만 해도 달성될 수 있다.

[토론문]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 이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에 대한 토론문

현 소 혜(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흥미로운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훌륭한 발표문을 먼저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동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 혼인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갈수록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인은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제도적 보장”的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굳이 양성평등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각 부부별로 혼인의 구체적인 태양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이제 혼인의 교섭은 “하느냐 마느냐”的 문제를 넘어서 “만약 한다면, 혼인으로부터 도출될 가능성성이 있는 의무 중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한 혼인상(婚姻像)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질적 의사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사설의 고수는 동기와 의사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의사설에 따르면 “혼인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오로지 입구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정형화된 혼인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혼인은 모두 가장혼인으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 부부간의 애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혼인, 가령 취업이나 국적취득·고향으로의 송금을 목적으로 혼인은 모두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소간 이중적인데, 이주혼인여성에 대해서는 금전적 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혼인이라는 이유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데 반해, 내국인 여성은 남자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혼인을 선택하더라도 그러한 비난과 제재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차별은 그야말로 출입국관리의 필요성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4. 발표자께서는 아마도 실질적 의사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령 1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실질적 의사설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가장혼인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거나 가족법상 혼인의사의 유무와 이민통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이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발표자의 주장과 같이 이민허가를 보다 형식화하는 것이 이주혼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5. 먼저 아직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사증발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가장혼인을 둘러싼 법적 규제의 유일한 동력은 출입국관리의 필요에 있으며, 부부 사이에 “가족결합의 이익”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굳이 사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이 성립한 후라면 순수하게 출입국관리의 필요만을 이유로 마냥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줄어들수록, 국적 취득의 비용 내지 부담이 커질수록, 이민만을 위하여 국제혼인을 악용할 가능성이 줄고,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의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이는 벼룩이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국제혼인 중 가장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불리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주혼인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외국인 차별로 인한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6.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동일한 국가 내에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가족결합의 이익”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연결고리로 한 이민통제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법의 문제는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테마인 것입니다.

7.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혼인의 동기가 어떠했건, 이미 부부관계의 실질이 형성되어 더 이상 가장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혼인을 하는 외국인 중 적지 않은 수가 기혼자이거나 기혼자였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국에 이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 한국인 배우자와 중혼을 맺거나, 가장이혼 후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는 스스로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로 하여금 그를 입양하도록 하여 자녀에게도 손쉽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결합의 이익”이 출입국관리의 필요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만약 이 때 출입국관리의 필요를 우선한다면 원가정양육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국제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성의 재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결국은 국가기관이 가장입양 성립 여부를 심사하여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통제의 방법이 없는 것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제2주제]

정책집단으로서 한국의 결혼이민자

— 가족, 여성, 혹은 이민자? —

김 혜 순(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I. 발제의 배경과 개요
- II. 국내 법률과 정책에 설정된 결혼이민자
- III. 평가: 권리보호와 인력활용 정책대상으로서
결혼이민여성, 문제인가?
- IV. 이민 선진국의 결혼이민자
- V.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

I. 발제의 배경과 개요

결혼이민자 집단은 지난 10여년 한국의 다문화담론과 다문화열풍의 핵심에 위치해 왔는데 이 변화의 주동세력이 정부였으며 통칭 ‘다문화정책’으로 불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임. 초기 형성과정에는 여성인권단체, 지방자치단체, 언론이 주요 견인세력이었지만(김혜순, 2008),¹⁾ 일각의 ‘다문화 광풍’, ‘역차별’, ‘퍼주기’식의 성토와 비판은 2006년 중앙정부가 개입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음.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 개선조치가 여러 번 발표·시행되었고, 2013년부터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출범하여 시행되고 있음.

초기에는 대중정서 뿐 아니라 언론으로 견인된 대중담론, 학술·정책 담론 모두에

1) 국내 다문화담론의 초기 구성과정을 지방 여성단체의 80년대 말 ‘교포처녀’의 피해사례 사회 의제화→지방 언론과 지자체의 적극 관심→시도단위 연구원의 대응방안 강구 및 여성연구자 동원→학술·정책 결과 확산→2006년 중앙정부의 주도와 독점의 과정으로 분석

서 호의와 적극수용의 대상이었던 결혼이민자가 견제와 숙고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저에는 국내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이들에게 설정해준 가족·여성·이민자라는 지형 간에 대립되는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이 본 발제의 출발점임.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는²⁾ 해당 사회에 고유한 사회·정치·경제·문화·역사적 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세계화의 수용과 편승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세계 보편적 경향의 영향력 또한 강력할 것임. 한편, 여타 사회현상과 달리 이민은 출현과 전개과정 자체가 법과 정책에 의해 추동되며, 이민사회 초기일수록 그 영향력은 절대적임. 즉, 이민자집단의 사회적 구성과 위치는 한국사회 고유의 특수성과 개방지향성, 세계화시대라는 국면성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한국은 신흥이민국이기 때문에 이민관련 현상의 특성상 법과 정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임.

따라서 본 발표는 먼저 국내 관련 정책에 설정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치를 가족성원(이하 가족)-여성-이민자 충위의 조합 방식으로 파악할 것임. 둘째, 가족-여성-이민자 지위 간에 내재하는 긴장관계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입에 따라 발현 될 수 있는 갈등에 주목할 것임. 셋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 대중적 기대와 연구 동향, 서구의 정책사례를 검토하면서 결혼이민자 관련으로 숙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함.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하 외국인법)에 의해 국내에 처음 법률적 으로 등장하고 동 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으로 처음 정책대상이 되었으나, 2010년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지원법)과 동 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하 다지원정책)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포괄되었음. 다지원정책은 2012년에 끝나고 2013년 2차 다문화가족정책(이하 다가족정책)으로 새로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수년간 국내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담론을 주도하고 다문화열풍을 불러 온 핵심 진원지라는 점에서 다지원정책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치가 가족-여성-이민자의 여하한 조합으로 구성되었는가의 확인은 이들 각각의 한국사회 내 위치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접근에 근거한 양적, 질적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앞서 명기한대로 국내 이민 관련 현상에서 법제도가 갖는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과 일천한 학술·정책적 기반을 감안하여 관련 국내정책

²⁾ Pessar and Mahler(2003)의 초국적 공간의 젠더 분석틀인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的 한 개념

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임. 가족정책은 건강가족지원법(이하 건가법)에 의한 건강가족지원정책(이하 건가족정책),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 이민법과 정책은 없기 때문에 해외 학술·정책문헌을 통해 정리한 이민정책의 정의와 분류를 활용할 것임.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모법은 각각 2004년, 1995년 제정되어 그 동안 진행된 기본계획의 차수가 다른데, 한국의 사회·정치·문화환경의 급격한 변동을 감안하여 가능한 동일시기 정책을 비교할 것임. 이상 언급된 정책의 개괄적 현황은 <표 1>에 있음.

<표 1> 비교분석에 활용된 관련 정책 개괄

	모법	기본계획*	최근 시행계획*
여성정책	‘96여성발전기본법	‘98 1차, 현4차(2013~17)	2012 시행계획
가족정책	‘03건강가정기본법	‘06 1차, 현2차(2011~15)	2013 중앙,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08다문화가족지원법	‘10 1차, 현2차(2013~17)	2013 중앙, 지자체
외국인정책	‘07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08 1차, 현2차(2013~17)	2014 중앙, 지자체

* 2014. 10.20일 현재 부처 홈페이지의 업로드 기준

II. 국내 법률과 정책에 설정된 결혼이민자

1. 관련법과 정책: 경과와 현황

- 관련 정책에 나타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흡수
- 2008년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4개 정책목표 중 하나인 <질 높은 사회통합>내 4개 중점과제 중 3개, 9개 추진계획 중 7개, 23개 세부 추진계획 중 18개 과제로 출발
- 2010년 1차 다자원정책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설치되었고,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별 시행계획이 매년 발표되어왔음
 - 다자원정책은 외국인정책의 <질 높은 사회통합> 부문의 3개 과제와 <질서 있는 이민행정> 중 결혼이민자 관련 과제를 가져오고 자체의 정책추진체계 설치 및 운영을 합한 5개 과제로 구성됨
 - : 2010년 다자원정책이 분리되었어도 외국인정책 1차 기본계획이 2012년까지 였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대부분은 양 정책기본계획에

공통으로 실렸고 다만 총괄부처가 법무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것임

- 2013년 다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의 2차 기본계획이 별도로 출발하면서 다가족 정책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을 보다 독점적으로 총괄하게 됨
 - 1차 대비 양 쪽의 기본계획에 같은 정책이 중복 게재된 경우는 대폭 줄었으나 시행계획,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 수준 시행계획에는 1차 다지원정책과 2차 다가족정책의 차이는 물론 외국인정책과의 차이도 찾기 어려움
 - : 이는 지자체에 교부되거나 자체예산이 배정되는 정책과제와 사업이 대부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대상이며, 동일 사업이 다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양 쪽으로 보고 수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외국인정책의 5개 정책목표 중 <2.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의 5개 과제 중 “국제결혼 피해 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의 2개 세부과제가 다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중복 리스트됨
- 결혼이민자는 2006년 정부 종합대책에 포괄된 이후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법제도상 위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고, 정책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으로 제도화되어있음
- 따라서 정책집단으로서 결혼이민자의 성격분석은 이들 두 정책을 대상으로 함

2. 다지원정책(1차, 2010~2012)에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가족, 여성, 이민자 성 분석³⁾

이민자로서 결혼이민자?

- 이민정책은 출입국과 체류자격을 관리하는 이민관리(immigration control)정책과 이민자의 유입국(=주류사회) 정착과 적응 및 국민의 이민자 수용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김혜순 2009, 2014).
- 기본계획의 과제②와 과제④의 첫 2개 세부과제는 이민관리 정책에 해당됨.
 - 전자의 국제결혼증개는 국제이주를 포함하는 초국경혼인의 증개기 때문에 이민관리 대상이며, 이민자의 입국과 이민예정자 대상의 정책 물론 이민관리영역임.
 - 후자의 과제④의 첫 2개 과제는 국적취득 전 자녀 없이 이혼 시 귀책사유에 따

³⁾ 이 절의 표와 그림은 김혜순(2014)에 실린 것을 거의 전재했는데 표5는 논의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

른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의 건이기⁴⁾ 때문에 이민관리에 속함.

- 사회통합정책은 과제④의 6개 세부과제 중 “결혼이민자”가 명기된 5개가 해당됨.
 - 과제④의 2번째 세부과제는 이민관리와 사회통합 양쪽 모두 관계있음.

<표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내 결혼이민자 대상 이민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1차 기본계획		이민정책 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②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이민관리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④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사회통합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	
	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③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⑤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추진체계 정비		

주: 추진과제의 번호는 정부문건에 나타난 순서에 따른 것임

- 해외문헌의 분류기준을 따르면 다지원정책은 이민자 개인에 대한 출입국과 체류자격을 다루는 이민관리정책, 정착과 적응을 다루는 이민자사회통합정책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이민자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중 정서와 학계 일각은 물론 정책 주무부처에서도 적어도 2012년 하반까지⁵⁾ 결혼이민여성을 ‘이민자’로 칭하는 것에 거부감이 극심했기 때문에 다지원정책이 이민정책이고 결혼이민자가 이민자로 접근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문헌과 정책분류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정책적 설정은 아니었음

□ 가족의 일원으로서 결혼이민자? : 다지원정책과 가족정책

-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으로 포괄되었기 때문에 국내 가족정책과 다지원정책

4) 『출입국관리법』에는 해당 조항이 2011년 신설되었지만 유관 여성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사업이 공지된 낸도를 볼 때 귀책사유 공인단체 지정과 현장 활동은 늦어도 2007년 부터인 것으로 추정됨.

5) 2012년 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세대분과에서 펴낸 용역보고서인 『한국의 다문화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대안』이 작업과정에서 관련 부처 일각에서 공식 경로를 통해 문서화된 이의 제기

의 기본계획을 비교함

<표 4> 다문화가족지원과 가족정책의 목적 및 <기본계획> 비교

다지원정책/다문화가족지원1차('10~'12)		가족정책/건강가정2차('11~'15)	
모법 목적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		건강가정생활 영위, 가족유지·발전, 가정문제 해결, 복지증진
기본 계획 의 주 진 과 제	<p>①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p> <p>②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p> <p>③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p> <p>④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p> <p>⑤다문화가족지원 정책추진체계 정비</p>	<p>①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p> <p>②가족 가치의 확산</p> <p>③자녀 돌봄 지원</p> <p>④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p> <p>⑤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p>	<p>건강한 가족문화 확산</p> <p>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p> <p>부모역할지원(교육·상담·건강증진·부모모임지원 등 부모역량강화)</p>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교육지원강화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확대 일반학부모와 결연지원으로 역량강화 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자료: 각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표 4>를 보면 두 정책은 모법의 목적, 다문화가족이 ‘④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포괄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 없음.

- 다지원정책①은 애초 외국인정책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여서 가족정책 ‘①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근접했으나, ‘다문화에 대한...’으로 바뀌어 유사성이 희석됨

- 결혼이민자 대상은 아니라도 두 정책의 유사성을 각 ③에 명기된 ‘자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가족정책에서는 가족의 기능 중 하나인 자녀 돌봄 관련이고 다지원정책은 자녀대상의 공교육과제를 다루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다지원정책 5개 과제 중 1개과제의 대상으로 명기되어있으며 자녀에게와 마찬가지로 적응(공교육 vs. 주류사회)과 역량강화라는 개인 과제임

- 가족정책에서 특정 가족원의 명기는 ②남성과 ③자녀가 있으나 개인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가족유지와 기능수행지원 과제임
→국내 가족정책이 단위로서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다지원정책은 개별 구성원 특히 결혼이민자와 자녀 대상 개인과제로 구성되어있어 같은 정책이 아니며, 결혼이민자는 가족역할 수행자가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음

→ 즉,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문화정책'을 통한 국가의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가족 만들기"는 법의 목적 외에는 근거 없는 비판임

- 여성으로서 결혼이민자? : 다지원정책과 여성정책
 - 관련 문건의 용어는 결혼이민자, 현장사업의 절대 다수는 대상이 여성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다지원정책의 5개 과제 중 ④과제의 세부내용을 국내 여성정책과 비교함

<표 5> 다지원정책 <(4)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과제와 여성정책 비교

	다문화가족지원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④	여성정책 3차 기본계획-전체
목적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	남녀평등 촉진, 여성발전 도모
세부과제	세부사업	정책과제
ⓐ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적합직종 발굴/‘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b)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민자 채용기업에게 「신규고용촉진지원금」지급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취업지원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연계 강화 농촌지역 이민자 기초영농교육 및 1:1 맞춤형 영농교육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근로자 차별방지 일자리 확대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 생활적응 지원/사회보장 확대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정보제공 확대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등 사회보장강화 생활민원의 지속적 발굴 및 제도개선 국적취득 전 이민자 등 의료지원 사업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대상별 복지욕구 충족 장애인 권리 증진 건강 보호
ⓓ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국내체류요건 완화 등 이혼 이민자의 안정적 체류관리 폭력피해여성과 동반아동의 거주/자활지원기관운영 확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 확대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 이혼/폭력 피해 인권보호 증진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강화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 구축 확대 농어촌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도 증진	평등 문화 확산 여성국제협력 확대 성인지정책시행 통합적여성정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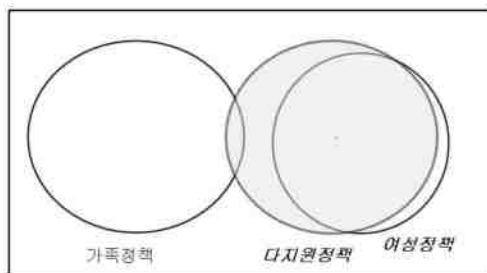
주1: 여성정책의 3대 영역은 오른쪽 끝에 표시. 평등문화화산 과제는 비교를 위해 구체화

주2: 세부과제나 하위과제의 순서, 알파벳기호는 두 정책을 비교하는 표의 편집 편이를 위한 필자의 조정임

- 근거 법률의 목적은 전혀 무관하지만 두 정책의 내용은 거의 일대일 상응
 - 다지원정책의 기본계획 과제④의 세부과제는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기본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 여성정책의 인력활용과 권익보호에 일치
 - : 세부과제①가 가족단위의 가족정책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결혼이민여성끼리 모임 중심이고 남편끼리의 모임이 별도로 가끔 있는 정도임
 - : 여성정책의 <정책추진기반>-평등문화 확산의 4개 과제 중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는 다지원정책 과제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와도 유사하고, '여성국제협력 확대'는 후자의 과제⑤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음
- 전체의 10%를 상회하는 남성은 한국사회나 본인 모두 기대하는 역할, 정책 요구나 목표가 여성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책집단이라 할 수 없음.
- 내용에 특정 성이 전제되었으나 외형상 무성적인 접근은 몰성적이라는 비판 하에 정책의 성인지성과 성별영향평가가 동일 부처에 의해 주창되어왔으므로 해당 정책 또한 '결혼이민여성' 명칭 사용 또는 남녀 특화된 정책으로 구분해야 할 것임

- 소결: 다지원정책은 가족정책이 아닌 여성(과 아동교육)정책, 즉, 결혼이민자는 여성
- 다지원정책은 국내 가족정책과 모법의 목적,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첩될 뿐, 오히려 여성정책에 일치했음. 그럼 1은 이를 도형으로 나타낸 것임
 - 결혼이민자는 다지원정책으로 포괄되었지만 가족역할이나 기능을 담지한 일원이 아닌 개인, 특히 여성으로 설정되어있음

<그림 1>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여성정책의 관계



3. 다지원정책과 다가족정책(2013~2017) 비교: 결혼이민자의 가족, 여성, 이민성

□ 명칭의 변경

- 1차는 다지원정책인데 2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설정 또한 유의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어 추가 분석

□ 영역차원 비교

<표 6>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계획 영역비교

다지원정책의 영역	다가족정책의 영역*
①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②국제결혼증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④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③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⑤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 각 영역의 순서는 정부문건에 나타난 대로임

- 영역의 명칭으로 볼 때 2차 기본계획에 이민관리로 분류될 과제는 보이지 않고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가족정책의 성격이 강화되었음

- 결혼이민자 개인 대상은 1차에서 5개 중 2개였으나 2차에는 6개 중 1개 뿐
- 2차의 6개 영역은 1차와 공통부분(③자녀, ④결혼이민자, ⑤정책추진체계)을 제외하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추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로 바뀌는 등, 3개 모두 “가족”이 강조된 과제임
- 2차 기본계획은 가족단위 정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있어, 결혼이민자는 1차 대비 이민자 개인 여성보다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접근되고 설정된 것으로 보임
- 이는 다문화가족이 국내 가족정책(건가정책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포함된 것과 일관된 접근이고, 주관부처가 발주했던 연구의 제안(설동훈 외, 2011: 241)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7>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영역과 중점과제 비교

1차 디자인정책		2차 다가족정책	
중점과제	영역	영역	중점과제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❶ 상대방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❷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❸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❹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❺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❻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❼ 다문화가족 성원 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통보활동 강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유아 등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❻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❽ 한국어능력 향상 ❾ 학교생활 초기 적응 지원 ❿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❾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제결혼증개에 대한 관리 강화	② 국제결혼 증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❻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한국어교육·의사소통 지원 강화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생활적응 지원+사회보장 확대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③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④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❻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❾ 소외계층 지원 강화 ❻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❻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❻ 직업교육훈련 지원 ❻ 이민자 역량 개발 ❻ 사회참여 확대	
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❶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정책 추진 기반 확충			❷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❸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중점과제 차원 비교

- <표 7>은 비교를 위해 1차와 2차의 유사 중점과제가 비슷한 위치에 놓이도록 영역 및 영역 내 과제의 순서 조정과 명칭 축약을 했으나, 각 영역의 과제구성은 원본 그대로임
- 중점과제 분포를 볼 때, 영역에서 새롭게 추가·보강된 것으로 나타난 3개 “가족”주제는 가족단위의 정책이라 하기 어렵고 1차와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수용성 제고>는 1차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세분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
 -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 구축>은 1차의 결혼이민자 대상 2개 과제 대부분이 속하며, 여성정책 중 <여성권익보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족” 대상이 아닌 결혼이민여성 개인 대상임
- 1차에서 결혼이민자 대상이었던 영역④의 6개 중점과제(ⓐ~ⓕ)중 Ⓩ가 2차에서 는 영역①<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진출확대>, 즉 2차위에서 1차위로 정책의 위상이 격상되었는데, 이는 여성정책 중 <여성인력활용> 해당 내용임
 - 다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명칭과 정책영역에서는 가족정책의 성격이 강화되어 있지만, 하위의 ‘중점과제’를 보면 1차 대비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인력 활용이 보다 강조된 것으로 나타남.⁶⁾

III. 평가: 권익보호와 인력활용 정책대상으로서 결혼이민여성, 문제인가?

1. 가족정책이 아닌 여성정책으로의 대상 설정은 정책 환경의 기대 및 지지와 불일치

□ 가족중심주의와 단일민족혈통주의의 투영에 따른 기대와 지지

- 한국인의 신부-아내-며느리가 되어 한국인을 낳아주고 키울 어머니고 한국사람,

⁶⁾ 1차의 ①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2차에는 각각의 중점과제를 갖는 2개의 영역(①②)으로 확대되고 정책내용과 달리 “다문화가족”的 명칭이 들어간 것도 주목할 변화인데, 문화와 교육을 주관하는 부처와 정책의 우선순위나 방향성 조정의 갈등과 협력 등 관료내부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 대상 다문화이해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학계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

즉, ‘우리 중 하나가 될 고마운 사람들’

- 취업, 유학 등 자신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일시 체류가 아님
 - 한국여자가 기피하는 농촌인, 빈곤층, 고령자, 장애인 등과 결혼해 주는 사람
- 8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외국인신부”로 시작된 프레임으로 인해 도시거주 결혼이민이 80%를 육박한 현재까지도 다수의 정책·학술활동에서 ‘대다수 농촌거주인 결혼이민자’의 영향력을 건재

□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피해자 페미니스트(victim feminism)의 전략적 동맹

- 가부장적 온정주의: 못사는 나라 출신의 어린 여자, 말도 안 통하고 교육도 낫아 폐쇄·배타적일 남편과 시어머니의 물이해와 폭력, 의지할 곳 없는 낯선 땅에서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누군가 달래줘야 하지 않나..
 - 도시 중심 경제성장으로 해체되었던 6.70년대 농업·농촌의 출신가족, 이주한 도시에서 다양하게 희생되었던 농촌 딸들에 대한 세대 간 감성이입
 - : ‘사회(=공적가부장)’가 나서서 공부도 시키고 일자리도 주면서 출신가족과 주인집 (=사적가부장)의 횡포로부터 구제·보호
 - 체제 순응적이고 희생하는 여성의 존중 및 중앙(장한 어머니, 효부, 유관순..)과 반대인 여성에 대한 응징-추방-멸시-무시는 가부장적 체제유지의 장치이며, 이런장치에 따르지 않는 남성(예: 폭력남편) 또한 응징의 대상
- 구조의 피해자로서 결혼이민여성: 국제분업 제조정으로 출신국 및 지역의 빈곤가중, 가부장적 기대에 따라 노동과 성을 팔아 가족을 부양하는 딸, 이윤추구를 좇는 결혼중개업자의 제물, 사기·매매혼으로 팔려와 성적학대·폭력·노동착취 대상화
- ‘다문화정책’이 배태되고 대중적 지원을 받았던 근거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 가족의 일원, 계승자가 되리라는 ‘가부장적이고 감성적인 기대’와 ‘피해여성에 대한 온정적인 보호’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정책 등 법제도 또한 가족역할과 기능수행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의 형식을 갖췄던 것임

□ 그러나 정책은 여성의 인권과 역량강화 중심의 여성정책

- 국내 대중담론과 고위 정책결정권자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지의 배경과 달리 가족정책적 요소는 없고 여성 개인의 인권과 역량강화 중심
- 물론, 법제도는 미흡·왜곡된 고위 정책결정권자나 대중적 현실인식을 견인·계도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으므로, 제도와 실행(practices) 차원에서 정책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된다면 이 불일치 자체는 문제 아닐 수 있음

- 내국인의 결혼이 상업화·도구화되는 정도와 그 속도가 우려될 정도인 국면에서 초국 혼인의 상업화·도구화만 유별난 것으로 지목하거나 매매혼으로 매도하는 선별적 의협심,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할 경로로 혼인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민족 중심의 가치판단의 문제는 별도 연구의 주제임
- 정책과정에는 감성적이고 가치판단적인 주장보다, 결혼이민여성의 내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에 필적하는 내국인 여성 집단, 결혼이민자가 소속된 가족과 유사한 계층의 내국인 가족 등 내국인 대상 정책과의 형평성(equity), 국가 정책으로서 여타 정책 및 새롭게 제도화되는 이민관련 정책으로서의 일관성(integrity)과 정당성(legitimacy), 초국 현상을 다루는데 따르는 국제협력과 국익(national security)의 균형감 등이 기준으로 활용·작동되어야 할 것임.
- 이하에서는 먼저 정책의 형평성, 정당성, 일관성이라는 기준에서 결혼이민자의 여성정책 대상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협력과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는 해외 정책사례를 비교해 볼 것임

2. 국내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본질적 긴장과 결혼이민여성의 여성정책대상화

□ 부권부계가족주의와 양성평등주의의 양립 가능성?

- 건가법 제정과정에서 충돌했던 복지부로 대표되는 “건강가정”과 여가부로 대표되는 “평등가족” 진영논리에서 전자 승리, 그러나 정책추진은 여가부
-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 중심 서비스에서 생활단위인 가정 중심의 가족단위 서비스제공에 초점을 둔 것이 건가법(김혜영, 2012에서 재인용)이며 동 법에 의해 건강가족지원 2차 기본계획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
- : 제정 이후 정권에 따른 여성·가족정책의 중요도나 우선순위의 전도가 일상화 되고(김혜경, 2005; 김혜영, 2012; 김혜순, 2014), 한국사회가 가족주의로 지탱해 온 만큼 관련 정책과제와 부처가 광범위한데 반해 주관부처의 낮은 영향력으로 가족정책은 유명무실화
- (부권)가족과 분리된 개인으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은 의외의 성과 : 학계나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집단, 여성운동 진영 출신, 여성운동의 성과로 형성된 정책결정 집단 등 소위 국내 페모크라트(배선희, 2007: 52-73; 이재경·이은아, 2010: 19-21)와 혈연·姻연·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영향력 강화

: 2001년 이후 여성인권지수는 정치외교의 경쟁력 또는 무기적 요소 중 하나로 부상

□ 부계부권가족의⁷⁾ 변형·해체·재구성되는 현실과 가족·여성정책의 충돌

○ 양성평등 지향은 출신가정과 학교, 대중매체 등 주요 사회화기관에서 입지 강화(양성평등의 국제지표인 GDI, GGI는 상위)

- 반면,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여성권한은 세계 중하위권이고 결혼가족과도 긴장
- : 남녀의 혼인과 출산의 연기·포기 이유는 우선순위가 상이한데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부담, 여성은 가사업무와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우선

○ 사회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가족을 둘러싼 내국인 남녀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가족형성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정책의 목표와 지원 대상 및 방식이 상이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이 남, 여, 가족에 작동하는 역학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임

- 이런 현실에 일방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책 간에 대립될 뿐 아니라 현실 남녀 각각과 이들이 구성하는 가족관계에 부정적이거나 미흡한 영향력

□ 결혼이민여성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여성정책 편향성과 역학관계

○ <그림 3>은 혼인에 대한 열망에서 국내 남성 평균보다 부권가족형성의 열망이 더욱 크다 할 한국남성과, 국내 여성 평균보다 경제적 욕구실현이 크다 할 결혼이민여성, 이들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정책이 갖는 영향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 다자원·다가족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최혜적⁸⁾ 체류자격 제공과 여성의 기본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며, 2차에서 후자가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
- 국민 대상 국내 정책에 비교해 볼 때⁹⁾ 정책의 제도화된 목표나 실행 모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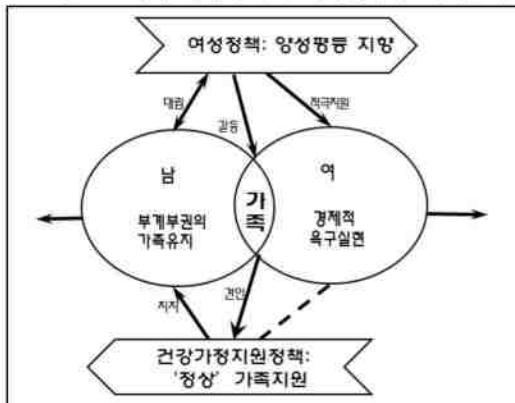
⁷⁾ 여기서 부권이란 봉건사회의 남성권력 형태를 칭하는 것이 아님. 임금노동과 자본관계가 중심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는 유임사회노동·여자는 무임가사노동이라는 성별분업논리에 따른 공적영역의 위계적 권리관계가 남성중심(부권적)이며, 한국은 이 논리의 이중적 실천양태에 따른 부권이 강력함

⁸⁾ 국내 여타 이민자 집단 대비, 다음 절에서 볼 이민선진국 사례대비 최혜적이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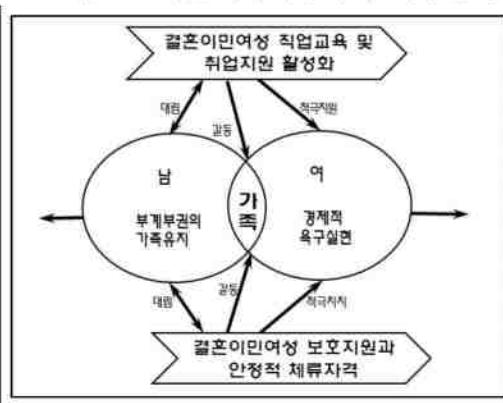
⁹⁾ 여성 개인 인권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1인당 투자되는 기용예산을 여성정책과 다자원·다가족정책에 비교해보면 후자는 문건과 선언으로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 개입과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한국에 연고가 없는 이민자의 경우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 추정됨

책의 근간이었던 모법의 목적과 달리 가족의 유지나 안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그림 2> 국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역학관계



<그림 3> 다문화가족정책의 역학관계



3. 정책의 정당성: “다문화가족”的 해체:

- 폭력과 사기혼·매매혼의 결과? 또는 대립되는 역학관계에 일방지향인 정책개입?
 - 다문화가족 해체증가 그 중에도 이혼 증가는 남편의 폭력과 무지, 사기혼·매매혼 때문이라는 것이 국내 정책·학술 및 대중 담론의 이해
 - 국내 다수의 관련 연구는 지원센터에서 소개하거나 센터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심층면담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체의 원인으로 이상의 요인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가족갈등·이혼배경에 관련된 응답은 입국 및 체류자격에 연계되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를 언급 않을 가능성이 감안되어야 함
 - : ‘가엾은 외국이민여성 또는 순진한 우리네 농촌총각’같은 이분법은 선입견일 뿐이라는 한 이혼소송 담당 법무관의 접근(이진철, 2010a: 2010b)이 적절해 보임
- 이혼까지의 평균 동거기간과 정책
 - 정책과 이혼의 연계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혼인이 혼통계에 포함된 이혼까지의 평균 동거기간 비교였음.
 - 내국인 부부는 황혼이혼 증가로 이혼당시 평균동거기간이 길어지는데, 외국여

성배우자와의 혼인에서의 이혼은 지난 10여 년간 2~3년을 유지해왔던 바, 국내 계속 혼인 거주의 경우 국적취득신청 자격이 2년 후 발생한다는 사실과의 연계여지 때문임

<표 8> 이혼까지의 평균동거기간

구분\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남+외국여(년)	2.9	2.7	2.2	2.3	2.1	2.1	2.2	2.5	2.7	3.1	3.2	-
한국여+외국남(년)	5.5	5.3	5.3	5.3	6.0	5.7	5.3	5.9	5.6	5.7	6.0	-
한국남+한국여(년)	11.0	11.2	11.4	12.0	12.2	12.3	12.5	13.0	13.8	13.8	14.0	-
전체 평균	10.9	11.1	11.3	11.9	12.0	12.0	12.1	12.3	12.8	12.9	13.0	13.2

주: 위 표는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를 편집한 것인데, 2011년 11월부터 “다문화인구통계”가 별도 편제, 일부 통계가 이양되는 과정에서 짐계대상, 성별, 국적지위별 분류가 “혼인이혼통계”와 달라져서 2011년부터 이전 자료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음

□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여성 혼인의 이혼율과 정책

- 문헌에 회자되는 다문화가족/국제결혼/외국인과의 혼인의 이혼은 이혼건수 증가를 주목한 후 혼인건수가 증가하니 이혼이 많아진 것일 뿐 문제가 아니라거나,¹⁰⁾ 건수가 증가하니 또 다른 정책(예: 방문가족상담)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되어 옴
 - 이혼율은 전체 유배우인구 중 이혼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인구통계 기법상¹¹⁾ 자료 부족으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은 아직 국가 통계화 곤란
- 현재 제공되는 통계청의 ‘외국인과의 혼인’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결혼 건수가 많은 7개국 여성과 한국남자와의 결혼에서 발생한 이혼을 추정하여¹²⁾ 다음 그림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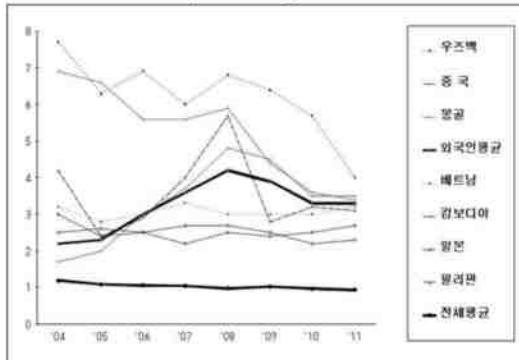
10) 이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일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 대비하여 2003년의 이혼율이 40%에 육박했다는 2004년의 소동이 있었고, 이는 건강가정지원법을 만들게 된 계기 중 하나였음(김혜경, 2005, 김혜순 2014). 2003년 한국의 유배우 이혼율은 100쌍당 1.44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현재 .94수준임. 차용호(2014: 13)의 인용에 따르면 현법 재판소의 2013.11.28.일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2항 위현확인 결정문의 4개 논거 중 ii)에 특정 7개국은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날 뿐(필자 강조)이라는 전술도 이혼율에 대한 위와 같은 오해를 반영함

11) 유배우 이혼율 계산의 분모인 유배우 연장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장래 혼인상태 추계인구를 기초로 산정’(통계청, 2012: 36)된다. 결혼이민여성은 장래 추계를 가늠할 한국 거주 기간과 자료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음.

12) 자세한 추정방식, 결혼이민여성의 정의, 그림의 출처는 김혜순(2014: 314-31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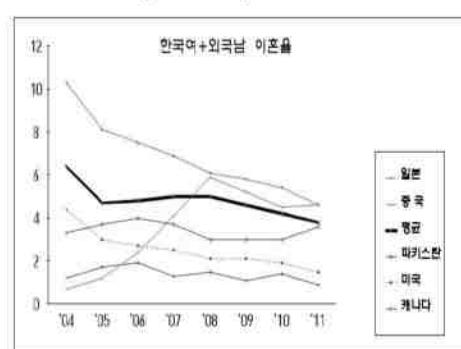
<그림 4> 주요

7개국출신우+한국 송남혼인의 이혼



<그림 5> 주요 6개국

출신 송+한국우혼인의 이혼



○ <그림 4>에 국내 전체 유배우 이혼율 보다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이 매우 높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특히 주목하려는 것은 이혼율이 출신국가와 연도별로 등락이 크다는 것임.

- 통상 인구통계는 위 그림의 국내 전체 유배우 이혼율에도 나타나듯이 연도별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 등락은 자연스러운 인구현상이라 보기 어려움
- 우즈벡, 몽골의 경우, 해당국가 출신과 혼인성사 개시 초기에 쌍방의 경험과 정보부족 때문에 높았던 이혼율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하향세를 보이는 것일 수 있음

○ 국가별 불규칙한 등락은 이민정책의 영향일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이주자의 행위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초국 혼인, 피임-임신-낙태-출산, 가족결합, 이혼, 경제활동, 재혼 등은 이주자자신이 처한 구조적 여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조의 피해자로서 수동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피해자 페미니스트와 반대(또는 보완적인) 입장임.
- 이주경로와 적응과정에서의 선택 및 결정은 이주자의 성별 뿐 아니라 정책에 나타난 젠더관계의 영향을 받으며(Itzigsohn and Giorguli-Saucedo, 2005; Pessar and Mahler, 2003). 정책은 성원이 국가와 만나 전략적 협상과 선택이 이뤄지는 지점.
- : 이주 과정에 작동하는 국가 및 정책의 영향력은¹³⁾ 해외이론으로 소개(정현주, 2009)되고 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관련 정책이 이혼의 지렛대로 활용된다는

13) 이주자의 초국성(transnationality)이나 정체성과 행위성에 주목한 국내 다수 연구는 다문화 가족 만들기라는 국가 역할으로 정책/국가를 전제하고 이혼은 이에 맞선 결혼이민여성 주체의 승리라는식으로 해석해왔음

점이 학위논문에서 지적 또는 심층면담 사례로 분석(박미정, 2010; 문경연 2011)된 정도임

- 즉, 이민관리 정책 뿐 아니라 사회통합정책에 나타난 젠더관계가 이주자의 성별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바, 한국의 관련 정책은 여성중심의 인권과 개별역량 강화정책이라는 점이 이주자의 혼인이주과정은 물론 이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연역할 수 있고, 이를 상기 통계추이 해석에 적용하려는 것임
- 추정된 이혼율 추이에 나타난 이혼율의 출신국별 연도별 등락과 정책의 연계성
 - <그림 4>에서 중국출신의 경우, 2006년에 전년 대비 50%p의 이혼율 증가를 시작으로 2008년 100쌍당 4.8쌍까지 치솟다가 감소한 것과 동포방문취업제의 2007년 시행이 2006년에 예고되었던 것의 유관성
 - : 그림4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이혼이 2008년 5.7쌍까지 증가한 점과 캄보디아에서 한국남자와 혼인을 제한한 정책이 2008년 발효된 것(김정선, 김재원, 2010)
 - <그림 5>는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결혼의 이혼인데, 지난 백여 년간 다양한 정치경제적 교류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제외하면, 상대방이 국내에서 갖는 이민자로서 사회적 위치와 이혼유형 간의 관련을 추정할 수 있음
 - : 중국출신 남성과의 혼인에서 이혼은 중국출신 여성과 같은 유형
 - :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남성과의 이혼율은 국내 평균보다 낮고 완만한 경향

4. 정책의 일관성: 국내 이민현상과 질서의 왜곡과 오도

- 국가에 의한 "결혼이민=취업이민" 공식인증
 - 이민자는 이민경로로 결혼이민 선택, 국가는 여성노동자로 노동권 보장
 - 이주여성에게 취업이민은 역량부족, 남자가 부담하는 이주비용, 입국허가 용이, 체류자격의 최혜조건, 가족초청·영주권·국적취득 가능
 - 최혜적·최우선적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결혼이민은 국비지원 취업이민화
 - 명칭과 명분은 다문화가족 안정, 내용은 여성인권 편향→가족의 불안정↑
 - 앞 절에서 상술한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이혼율 문제
 - 자국출신의 자조모임, 친정부모 초청, 친정보내기, 무료 화상전화 등의 초국활

동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이들 중 특히 자조모임과 취창업활동은 이주여성이 부권과 국가통치에 대항하는 전략을 교환하고 습득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음이 국내외 연구에서¹⁴⁾ 확인할 수 있음

○ 남편과 국민은 계몽대상, 이민여성은 인권실현과 역량강화 대상

- 내국인의 역차별정서, 사회양극화로 공격대상화 가능
- 물적 기반이 취약하나 국가의 경제적 위상 때문에 혼인이 성사되었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가부장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사적가부장의 존재 무력화, 국가가부장과 관계가 지속되는 한¹⁵⁾ 혼인 지속 이유 없음

□ 정책으로 가족에서 해방된 결혼이민여성의 수도권 이주 전망 ↑

○ "지방의 인구정치학"으로 적극 유치되었던 결혼이민여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 결혼이민 집단은 다 이민 집단 보다 전국적 산포를 보이지만 한국의 유례없는 중앙 집중성에 따른 기본 생활여건의 차이로 이주 당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더 큼
- 이민자 일반은 보다 많은 취업기회와 동향 출신의 집거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서비스와 지원 때문에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
- 지방재정은 결혼이민여성의 지방→수도권 이주 지원비化

□ 의사(psudo)이민정책, 즉 물이민적 이민정책으로 사회통합이 아닌 갈등의 조기 촉발

○ 정주가 기대되고 허용되는 이민자에게 가족결합권이 보장되는 것은 국제이주자에 대한 협약과 이민선진국 정책에 일치하지만, 선별적으로 최혜적인 결혼이민자 대상 체류자격과 다양한 생계지원에 따라

- 별도 정책대상 집단화하는 "중도입국자녀" 또는 "전혼자녀"의 규모 및 국내 이민역사 대비 이민2세대의 조기 출현과 폭발적인 증가속도
- 남자배우자의 낙총화, 인종차별적 순혈주의에 따른 분리, 주변화, 천민화의 가능성
- 선진 이민국의 이민사회의 갈등과 긴장은 이민 2,3세대에 나타나는 것에 대비됨 전폭 개방+최선의 체류자격→이민2세대(이민사회갈등)의 조기출현과 급증

○ 세계 최고의 (결혼)이민우 vs. 복지와 무관한 국민

14) 국가나 정책은 언급되지 않고 이주여성의 활동만을 분석한 국내의 초국주의 연구물들

15)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란 결국 입국 전부터 죽음까지의 지원

- 유럽 평가 1, 2위인 스웨덴, 포르투갈보다 더 포괄적이고 월등한 혜택
- 복지수혜와 인권보호의 기억이 없는 내국인이 느낄 열파감
→“다문화정책”에 노출↑→결혼이민여성의 국가 의존↑+국민의 열파감↑

- 국제결혼증개는 상거래로 시장에 맡기고 국가차원의 AS 자처
 - 결혼이민은 이민의 한 종류인데 결혼이민을 가져오는 국제결혼증개업을 국내 결혼증개업과 같이 관리하는 것은 결혼이민을 결혼의 한 종류를 보고 있음을 드러냄
→국내결혼의 상업화와 증개업의 문제는 사회문제지만, 결혼이민을 불러오는 초국혼인의 상업화와 증개업은 이민영역의 문제이고 범죄임
 - 국내 신혼부부는 친정과 시부모의 우려에도 당사자 나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족생활 구성하며, 이민선진국에선 입국자격과 범죄행위 단속 외에는 이민자 가정 불개입인 것과 달리
 - 한국은 국가의 경쟁적 예산집행을 통해 집체교육 뿐 아니라 이민자 개별가정 을 방문해서 언어와 자녀양육 가르치고 도와주기, 가족관계상담해주기 등 토탈케어
 - “하자” 발생마다 국가(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차원의 사과와 선물보따리
 - “사돈의 나라”라는 정치수사는 외교적 선방 또는 자폭?
→국가가부장(姪父)의 며느리 기 살리기(역량강화)라 할 정도로 정치담화에 등장하는 사위·사돈·며느리 修辭, 친정 보내고 부모초청, 화상전화 등 (초국활동)지원.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적 AS자처는 국가의 정치경제 안보 저해 소지
 - 세계화이민시대란 국가주권과 존립의 기반(영토와 성원) 중 성원의 경계도 희석됨을 의미하며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는 상대국의 재외동포로 정치외교적 갈등의 휘발지점
 - 이민자가 귀화했다 해도 출신국에는 재외동포이며 경제적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
 - ※ 필리핀, 베트남-결혼증개업 불법 캄보디아-국가적 우려, 금혼조치, 2008년 캄보디아의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염두에 둔 외국인과의 혼인 잠정 금지와 2010년 단서조항 명문화
→(결혼)이민자의 인권 최대 보장·지원이란 국내외 정치적 수사로 일면 성공적

이지만, 전형적인 '고객정치'의 폐해에 더해 그 대상이 이민자기 때문에 국내 갈등유발

→이민자 중 결혼이민여성만을, 국내 여성/가족의 역차별 정서를 유발할 정도의 지원, 결혼이민의 국비지원 취업이민화라는 것은 이민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흥미로운' 연구대상

IV. 이민 선진국의 결혼이민자

- 현상, 학술대상으로 존재, 사회적가시성은 낮고 별개의 정책집단 아님
- 일상·학술적으로 국제(int'l)결혼보다 인종민족간(inter-ethnic/-racial) 결혼사용
 - 혼인 체결당시 거주국이 다른 초국혼인(cross-border M)은 '세계화 이민' 이후 사회적·학술적으로 가시화
 - : 국내 거주자는 국민(citizen) 또는 가족초청이 가능한 국적 미취득의 선이민자(immigrants)이고, 해외거주자는 결혼이민자(marriage migrants)
- 법률, 정책적으로 가족결합(family union)은 이민관리대상의 한 범주, 입국 후의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는 이민자(해당되는 경우 - children, -women 언급)로 통칭되는 정책집단의 일원
 - 가족결합 대상 중 배우자는 국민의 초국혼인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한 이민자는 출신국에서 혼인했던 배우자와 초국혼인 배우자 모두 포함
 - 입국 후엔 남녀 불문 이민자가족의 일원일 뿐, 위장결혼과 가정폭력 외에는 법이나 정책의 별도 고려대상 아님
 - 유일한 예외는 대만으로 입국 후 사회통합정책대상으로 '혼인이민'이 별도 존재하지만 한국과 다른 역사·인구·정치배경을 감안할 때 같은 사회·정책적 위상을 가진다 하기 어려움
 - : 2003년에 '외국인과의 혼인'이 전체의 31.9%까지 기록(김윤태·설동훈 2005, 한국은 2005년 13.5%가 최고), 이들 혼인 중 자국인 중국배경이 최소 70%로 추정¹⁶⁾(한국의 한국배경은 최대 40%)
 - : 대만-중국 관계로 결혼이민의 선거·정치 의제화(Tsai, 2011) 등

16) 중국본토, 홍콩, 마카오 출신이 2010년 66.7%(고혜원·김상호 2010: 92~3)라는데, 화교인구 4800만 명(2009-2-2 노컷뉴스 보도)의 절대 다수가 동남아에 거주해왔음을 감안할 때 동남아 출신 여성중 다수도 중국배경을 가졌을 것을 감안한 추정임.

: '혼인이민'외에 다문화가족, 이민자가족식의 별도 정책집단 또는 대상은 없음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은 한국만의 정책집단(김혜순, 2009; 2014: 305)

□ 학계의 결혼이민자

- 전통적인 가족/여성연구에서 인종민족간 결혼가족과 해당 가족내 여성에 주목하는 연구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결혼과 가족관계 적용-갈등-가족해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따라서 기존 가족 및 부부관계 연구에 언어와 문화 변인 추가하는 식
- 민속·인류학·문화연구의 심층 분석은 구조, 행위성이 구체적 개인에게 작동되는 방식을 사례분석을 통해 추론하지만 우선적 관심은 개인의 의미체계와 삶의 구성방식
 - 이민자의 자기기술에 집중하면서 이민자의 주체성을 과다 부각하는 "과다행위성"(hyperactivity of agency, Archer, 2010; Bakewell, 2010). 국내 젠더 관계나 정책(국가)은 추상화·고정화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비판.
 - 언어소통, 접근성의 문제로 연구사례의 편향성/예외성의 문제 소지
- 구조적 접근(피해자 폐미니즘)은 세계분업제조정으로 궁핍해진 미개발국에서 사회와 가족의 가부장적 압력/인신매매의 피해자, 개발국 남성의 가부장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매매혼과 폭력의 피해자
- 행위성(agency)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생계유지전략 구상과 적용이 세계화시대 들어 공간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주과정 분석
 - 억압적인 구조 자체의 분석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행위성 및 행위를 구상하면서 동원하는 전략을 분석하면서 구조적 여건에 관심을 둠
 - : 간접적으로라도 여성/가족이 결부된 경우, 구조적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대상은 광의의 성(sexuality와 생식적 성 등)과 노동(전통적, 감정, 돌봄노동 등)을 포괄하게 됨. 즉, 임신, 출산, 혼인, 이혼, 가사·자녀도우미, 간병인, 연예 및 성산업 종사 등등

V.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

1. 결혼이민자 대상 : 명칭은 내용에 따라 결혼이민여성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¹⁷⁾

1) 1안: 현행 정책의 기본 얼개 유지

이민관리 상 결혼이민여성을 명확히 규정,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지원이고 정책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여성 지위 특징, 국제결혼증개는 이민법

<이민관리 측면: '결혼이민여성'의 별도 규정 외에는 2안과 공통>

- 정책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위를 인정하되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
- 외국인노동자 송출국과 동일한 국가 출신의 여성배우자에 한해 입국자격을 처음부터 결혼이민여성으로 특정; 상대 언어 및 가족문화에 대한 소정의 사전교육 이수 부부에게 우선적 지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현재의 의무화 위험 판결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기 입국한 결혼이민여성 또는 타 이민자자신이나 이들의 방문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남성과 국내에서 결혼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할 경우 역시 같은 조건을 충족시기도록 규정하되, (이미 규정되어있듯이) 대체방안 마련
- * 미국에 유학 비자 신청, 입국심사를 받는 후진국 출신 여성은 결혼 후 정착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현장 영사의 선입견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민관리는 표준화, 객관화가 최선의 기준이라 할 것임
- [특정국가 출신 남성] 입국자격 또는 체류자격 변경은 결혼이민이 아닌 국민의 배우자로 한정하되, 이를 쌍방에도 상기교육 규정하고 대체방안도 마련
-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사전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자격에 상응하는 사회통합정책의 특혜를 받기 위한 관문(=이민관리 차원)의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그 내용과 진행방식을 구상하되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도록 함
- 「결혼증개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결혼증개 부분은 「출입국관리법」(또는 향후의 통합이민법)으로 이관하고 이민관리 상 필요한 세부내용 개정
 - 이윤추구를 위한 국제 상업혼의 억제는 상대국에서 희망하고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에 관련된 문제임

<이민자사회통합 측면>

- [기간] 결혼이민여성의 입국·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현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정한대로 귀화 후 3년까지, 귀화를 않거나 못한 경우 입국 후 일정기간

¹⁷⁾ 이 절의 내용은 김혜순(2012)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편집

(5년 또는 7년)까지로 별도 대상으로의 지원기간 명기

- [목표]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모든 별도지원은 ‘다문화가족/가구의 안정성’을 목표로 재구성하고 평균적 역량을 가진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부합하는 정책과제 개발과 지원
 - 개별 가정과 부부의 선택 및 협상에 의해 맞벌이, 남성가장, 여성가장, 출신국의 여성가족부양 또는 동거,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 다양한 결합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별도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범죄적 상황 방지 및 가족해체 조장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임
 - 중하층 기혼여성 삶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과 이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상회하는 지원은 형평성에서 불가하며, 초국가성을 가진 이민자로서 한국인배우자와 지역사회에 미칠 효과 또한 감안되어야 함
- [특정 국가 출신 남성배우자] 이민사회 일반의 이민자 대상 공통 서비스와 일몰 지점을 별도로 지정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측면의 사회통합정책 제공
 - 일몰지점 이후에는 영주자격의 일반 이민자 또는 국민에 준하는 차별 없는 권리보장
- [관련 정책대상] 결혼이민여성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증가할 이민여성과 이민배경 가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련 지원기관과 서비스에 다국어서비스와 인력을 보강하되, 이민 인지적 관점을 갖도록 역량보완
 - 이민배경 가족의 자녀는 이미 ‘다문화가정 자녀’로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에서 각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하므로 현재 정책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남는 것은 결혼이민여성 뿐이고, 최소한이나마 있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동원은 이민관리에 연계되지 않는 한 지양해야 함
 - 이민배경 가족은 지역 및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목표로, 이민여성은 여성으로서 차별과 폭력에 대한 현황 및 권리교육과 지원서비스 제공
- [기관 · 인력정비]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민자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통폐합하되, 해당 지역 이민자 분포에 따라 주력사업의 내역 조정, 기존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이민자지원센터, 여성 또는 가족지원센터의 다국어서비스인력으로 재배치

<장단점>

- 단점은, 2안보다 덜 본질적이어서 본문에서 지적했던 다수의 문제점이 그대로 면서도 조정을 위한 연구 및 논의과정이 지난하다는 것임
 - 지금까지 확장일변도였던 다문화정책지형에서 어느 분야의 축소조차 가능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2안 또한 지난 10년간의 정책으로 결성된 관·민·학

'다문화비지니스' 기득권의 이해관계 설득과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임

- 장점은 2안보다 덜 혁신적이라 약소하나마 조정가능성이 있다는 점

2) 2안: 이민관점으로 관련정책 체계화

입국자격은 국민의 배우자만 인정, 사회통합은 이민자 공통에 국한

- ※ 덴마크에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국내 거주 이민자가 택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하나일 뿐 입국자격으로는 엄격히 통제하는 것처럼 현지 결혼을 통한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입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강구

<이민관리 측면>

- 위장·사기결혼 검증을 위한 규정구체화와 행정체계 확충

<이민자사회통합 측면>

- 귀화 또는 영주자격 등 국내 체류자격에 맞는 권리와 자격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켜지도록 관련되는 기존 법률 개정 및 인종민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이를 법집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확충
 - 이민자에 공통되는 정착과 지원서비스(예: 한국어, 기초 생활법질서 교육)는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되 다국어 서비스 및 콜센터 운영 등 이민사회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품질개선
- 이민여성 또는 이민배경 가족으로 필요한 별도의 정책 서비스는 기존 여성과 가족관련 지원기관과 서비스에 다국어 서비스 인력 활용(1안과 동일)

<장단점>

- 단점으로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으로 결성된 관·민·학 '다문화비지니스' 기득권의 이해관계 설득과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임
- 장점으로는, 본문의 정책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 대응, 변화하는 이민정책환경에 부응, 국제적으로 객관적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민정책 체계가 구성된다 는 것임
 - 정책집단으로 결혼이민여성은 대만 외에는 해외사례가 없고 다문화가족은 전혀 없다는 이민정책의 일반 경향 부응
 - 국민 및 부계가족성원에 대한 기대로 경제적으로 후진국 출신 여성과의 국제

적인 상업혼을 허용하고 전폭 지원하는 봉건 영주국가적 개입이라는 학계와 국제관계에서의 비판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2005년 이후 외국인과의 혼인이 감소추세이며, 외국인과의 혼인에는 외국인남성 국민배우자, 선진국 출신 국제 결혼자, 귀화 및 인지에 의한 법적 한국인 등, 국민 및 부계가족성원에 대한 기대를 받는 결혼이민여성보다 이민배경 성원이 증가한다는 현실 반영
- 이민자에게 국민보다 전폭적인 지원과 성공한 이민자를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반다문화정서를 완화할 수 있음

2. 정책사업 중심에서 법제도 체계의 이해와 정비로

2012년 개최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다문화정책’ 대상에 이민자가족도 포함하라는 고위 당국자의 언명이 있었다고 강조되었음(총리실, 2012: 3-4). “다문화가족” 정의에 꼭 필요했던 한국인과 무관한 이민자끼리의 가족도 ‘다문화정책’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지금까지 이 분야의 관행을 볼 때 고위당국자의 ‘지시-사업 확장-사후 법령개정’이 관행이었으므로 법적정의 개정 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대상 확대’, ‘다양한 외국인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검토’가 명문화되어 나타났고(여가부, 2013), 그 일환으로 가족결합과 가족이민에 대한 연구용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 결혼이민자는 명목상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민)여성인권보호와 역량강화 우선의 이민정책체계(이하 여성지원 이민정책체계)>가 구축되어왔는데, 이제 그 적용대상을 여타 가족으로 확장한다 할 때 편이성과 효율성,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그 또한 이미 구축된 “여성지원이민정책체계”的 확장과 활성화가 지속될 것이라 예측됨.

이에 더하여 농축산업분야 이민노동자의 경우도 성폭력과 인권중심의 문제제기가 부상하고 있으며, 2012년 재경부에서 공식 제기했던 외국가사노동자 등, 최근 이주노동자의 여성화가 세계보편적 추세이므로 국내에 구축된 “여성지원이민정책체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음.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여성지원이민정책체계”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됨.

1) 이민관리와 사회통합 정책 연계

□ 엄격한 입국관리, 이민관리에 연계된 사회통합지원

- 대다수 선진 이민국은 물론 국내에서 다문화주의의 성지점으로 인식되는 호주, 캐나다 또한 사회통합에 부담이 되지 않을 이민자 선별을 위한 엄격한 이민관리 정책을 채택해 왔음
 - 다문화주의에 대응·대립되는 개념으로 국내에 소개 널리 인용·회자되어온 '선별적 배제'는 이민관리, 전자는 사회통합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함. 입국자의 선별·배제는 이민관리에 내재된 본질이며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도와 범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유용한 개념이 아니고 더구나 다문화주의의 반대라 할 수 없음
- 모든 이민자는 입국당시 체류자격에 맞는 입국허가를 받고 이에 준한 체류가 기대되는바, 유학생은 학교당국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수학하며 소정 시간 내의 경제활동만 인정되고, 노동이민자는 고용주의 초청으로,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초청으로 입국이 허가되어 각각 초청자의 법적 책임 하에 놓이게 됨
 - 선진 이민국 사례를 볼 때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엄격한 이민관리정책에 의해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에게 입국목적에 부응하는 정착과 적응지원정책을 시행하며, 따라서 노동이민자 대상 학습권이나 유학생의 노동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음
- 같은 논리라면,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입국목적 상 이민자 일반에게 공통되는 지원 외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에 한정된 지원이 정당함
 - 전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정책을 만들면서 국가가 결혼이민여성을 전업주부로 한정하거나 지금까지 그리고 2차 계획에서처럼 노동자로 적극 지원하는 것 모두 정당하다 볼 수 없으나, 어차피 만들어 놓은 정책 집단이라면 이민, 여성, 가족정책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임
 -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지원의 경우,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인적자원과 경제력 제고가 아닌 다문화가구 단위의 생계안정과 지역사회성원으로서의 적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임(김혜순 2010)
- 국가가 정당하고 형평성 있는 이민관리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고 인식할수록 원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임(Ersanili & Koopmans, 2010; Koopmans, 2010; Rajiman 등 2008)
 - 이민관리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작동하는 외생적(국제적), 내재적(국내 수요와 수용가능성) 요인을 감안하면서 이민관리정책과 연계된 사회통합정책 결정과 집행

2) 이민자의 정착 및 적응지원체계와 방향 정립

- 이민자 공통으로 적용될 정착 및 적응지원
 - 기초 생활 질서 및 기본 생존에 필요한 정보의 다국어 정보 서비스
 - 체류자격 점검 및 기초 생존권 보호 관련 서비스인력과 기관 확보를 위한 법제 도화
 - 이민자 집단별(입국목적 및 체류자격, 국적별, 성별)로 차별화되는 정착 및 적응 지원
 - 입국목적별로 유학생은 학업중심, 결혼이민(여성)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성 중심式
 - 정주·귀화 중심의 지원 지향, 국적취득, 영주, 외국인주민, 단기체류 등 자격별 지원
 - 국적별로는 최소한, 가장 많은 한국계 중국인, 선진국 출신 이민자, 기타로 차별화
- 이민 지위로서 결혼이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점검 필요
 - 결혼이민은 이민의 한 경로인데 한국남성과 사회, 정부는 결혼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상충되는 기대에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현행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은 체류자격에 따라 이민자 공통 사회통합정책, 국내 여성정책 또는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지원

3. 결론: '다문화' 성찰과 이민체제로의 변환

- 사적영역(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개입 논란에 대한 일관성 유지
 - 지금까지는 초국혼인을 결혼의 한 형태로 보면서 입국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을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반대하는 진영에서 입국 후에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일환이라며 그 성원인 결혼이민여성 보호와 지원을 옹호해 왔음.
 - 초국혼인은 국가의 관할권인 영토와 성원관리에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개입이 당연히 요구되지만, 입국 후에는 초기 이민자 적응지원과 국내 여성지원의 범위를 넘는 사업과 예산 투자는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통치와 개입으로 평가됨
- 한국의 가족제도 및 정책변화를 감안한 가족이민 제도 구상

- 외국인노동자의 가족결합 허용을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관련 법규 및 정책 마련
 - 한국 가족제도와 형태, 기능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내 가족정책의 위상과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진행 중이고, 이민선진국의 경우와도 부응하기 위해 입국 후 가족관계나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범죄적 경우로 제한

□ 이주의 여성화 대비

- 국내 이미 형성된 여성인권보호와 역량강화 우선의 물이민적인 한국적 이민정책체계의 작동과 확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선책 마련 필요

□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접근 지향

- 세계화에 따라 경제목적의 이민·이민자 증가, 초국성·국제협약의 준수 압력 증가, 귀화한 이주자도 상대국의 재외동포이며, 송출국은 송금수입과 재외 동포망을 활용한 정치·경제적 경쟁력과 협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자라는 점 등 감안
 - 이/다중국적 수용, 순환, 귀환이민, 이민자의 출신국과 연계(송금, 모국방문 및 모국과 경제활동, 친지초청 등), 초국적 공동체와 분절적 동화 등 초국성이 강화되는 중에 국가예산을 투자한 이민자의 초국활동 지원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 이민정책의 일반정책과의 연계 및 일몰지점 설정

- 이민자는 입국 후 정착과 적응을 거쳐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입지될 것이라 기대되는 바, 이민정책이 아닌 일반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민정책의 일몰지점을 이민자 집단별로 법제화해서 관료적 확장주의의 한계를 설정해야 함

□ 개별 부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구상기구 필요

-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에 따른 변화는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다양한 대응을 시도했던 선진 이민국가 조차 세계화이민시대에 들어서면서 갈등과 소요를 겪고 있으며, 국민적 동월을 위해 단일민족·혈통주의를 활용해왔던 근세사를 감안할 때, 담론과 수사로서 '다문화(주의)'와 관료적 행정주의를 넘어서는 이민 인지적 관점의 정책대응 시급
 - 이민 관련 정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경험과 인력풀이 어디에나 절대적으로 빈약하며, 선진 이민국과 다른 시대 및 사회·문화·경제·지정학적 배경을 출발지점으로 한다는 사실의 적시와 공유 시급

-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과 영역확장 경향은 관료제의 본질적 특성, 나아가 생존논리기 때문에 문제제기와 지적은 또 다른 경쟁과 영역확장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의 중복성·일회성을 지적할 경우 정책추진체계 확충과 강화로, 정책 대상 설정의 문제를 제기하면 정책 대상 확장으로, 과다 지원과 투자를 지적하면 저조한 이용률과 사각지대 찾기로, 낮은 성과를 지적하면 시설과 인력확충으로 대응할 뿐 정책 프레임(policy frame) 설정 자체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음

참고문헌

- 고혜원·김상호. 2010.『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유태·설동훈. 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중소연구』 107: 143-187.
- 김정선·김재원. 20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경제와 사회』 86(여름): 355-344.
- 김혜경.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여성과 사회』 16: 67-102.
- 김혜영. 2012. “기로에 선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여성학』 28(3): 63-94.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한국사회학』 42(2): 36-71.
- _____. 2009.『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 법무부-한국사회학 용역보고서.
- _____. 2010.『대구광역시 거주 외국인 대상 일자리 제공방안: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_____. 2012. “결혼이민자 정책”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용역보고서 <한국의 다문화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와 대안>
- _____.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

- 과 여성정책의 물이민적·물성적 결합.”『한국사회학』48(1): 299-344.
-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과 이혼사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44(2): 71-112.
- 박미정. 2010.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배선희. 2007. 『국가페미니즘의 정치학』. 한국학술정보.
- 설동훈·강기정·이명하.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한국이민학회 용역보고서.
- 이재경·이은아. 2010. 『국가와 젠더: 성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
- 이진철. 2010a.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I).”『고시계』7월호: 146-151
_____. 2010b.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II).”『고시계』8월호: 92-98
-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도시지리학회지』12(1): 109-121.
- 차용호. 2014. “가족이민제도의 이해: 결혼이민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재판연구회 발표자료
- 총리실. 2012. “보도자료-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 통계청. 2012. “보도자료: 2011년 혼인·이혼통계.”

- Archer, Margaret S. 2010. “Morphogenesis versus structuration: On combining structure and action.” *British Jr. of Sociology* 61(suppl. 1): 225-252.
- Bakewell, O. 2010. “Some reflections on structure and agency in migration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36(10): 1689-1708.
- Ersanilli, E. & R. Koopmans 2010. “Rewarding integration? Citizenship regulations and the socio-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5): 773-791
- Itzigsohn, José, and Silvia Giorguli-Saucedo. 2005. “Incorporation, transnationalism, and gender: Immigrant incorporation and transnational participation as gendered

- process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9(4): 895-920.
- Koopmans, R. 2010 . "Trade-offs between equality and difference: Immigrant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 1-26
- Pessar, Patricia R. and Sarah J. Mahler. 2003. "Transnational migration: Bringing gender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3): 812-846.
- Ruffer, Galya Benarieh. 2011. "Pushed Beyond Recognition? The Liberality of Family Reunification Policies in the EU."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6): 935-951.
- Tsai, Ming-Chang. 2011. "'Foreign brides' meet ethnic politics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gration* 45(2): 243-268.

[제3주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 이주에서 정주까지 —

김 지 영(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I. 서론

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2.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3.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4.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5.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실태

III. 결론

I. 서론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협박, 성폭력, 경제적 착취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배우자에 대한 허위·왜곡된 정보 때문에 인신매매성 결혼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주과정에서의 피해뿐 아니라, 정주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다수가 한국어와 한국사회, 한국인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통해 가정에 편입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댁식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양문승, 이선영, 2009). 이주여성에 대한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언어장벽과 정보부재로 사법당국이나 지원기관을 찾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많으며, 사법당국과 지원기관을 찾은 이주여성들도 외국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2차 피해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주자들은 부인(wife), 혹은 가정부나 유통업종 사자 등의 노동자(worker)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 노동자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Nicola Piper & Mina Roces, 2003).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진수 2005), 한번이라도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40%가 넘고, 86%의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현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직면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높으나, 아직 이러한 영역에 관해 조사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뿐 아니라, 노동현장, 관공서,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영역 안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간 이주와 한국내 정착을 거치는 동안, 가정, 직장, 사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하여, 보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 여성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원주민여성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정도는 원주민여성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셋째, 결혼증개과정, 가정, 직장,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설문조사는 결혼이주여성과 원주민여성 두 집단에서 실시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규모, 조사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편의표집 방법을 택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필리핀, 캄보디아의 4개국 여

성으로 한정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은 2010년 결혼이주여성국적별현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외국인여성중, 베트남 25%, 중국 25%, 필리핀 5% 캄보디아 3%를 차지하는데, 표적수는 베트남 200명, 중국한족 100명, 중국조선족 100명, 필리핀 200명, 캄보디아 100명으로 잡았다. 중국의 경우, 언어장벽이 없고 문화적 뿌리가 동일한 중국조선족여성들과 중국한족여성들이 국내에 이주하여 처하게 되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여 이를 분리하였다. 때문에 국적별로 보면 4개국이지만 집단별로 보면 5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쉼터, 자조모임,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문을 수집하였다.

<표 1> 이주여성 기관별 설문현황

단체명	부수
이주여성쉼터	71부
이주여성인권센터	90부
자조모임	125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0부
종교단체	45부
이주노동자관련지원기관	160부
합계	841

이주여성관련 지원기관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50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주노동자관련 지원기관에서 받은 설문이 총 160부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설문을 수거한 이주노동자관련 지원기관으로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노동자의 집, 근로자센터, 노동복지회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 수거된 설문 부수를 국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주여성 국적별 설문현황

국적	부수
베트남	276부
중국한족	166부
중국연변족	123부
필리핀	169부
캄보디아	107부
합계	841부

베트남이 가장 많은 276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한족이 166부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연변족이 123부, 필리핀이 169부, 캄보디아 가장 적은 107부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국적별 이주여성 수에 비례한 결과가 나왔으며, 원래의 표적수를 초과하여 수거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총 819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원주여성설문은 이주여성과의 비교를 위해 결혼경력이 있는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자들은 5인 이상 고용 혹은 근무사업장에서 단순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만 30세이상 49세이하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주여성의 비교집단이라는 특성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조사방법은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지역은 조사비용과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하였다.

<표 3> 원주여성 설문현황

	서울	남양주시	시흥시	합계
전체	200	100	100	400
30~39세	100	50	50	200
40~49세	100	50	50	200

2.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어온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결혼중개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과 결혼중개 과정에서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정보적 불이익이라는 두 범주에서 개별 문항들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에서 결혼 중개업체/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378명의 자료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중개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4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18.7%가 ‘중개업자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협박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원치 않는 결혼을 하도록 강요나 협박

	빈도	%
예	67	18.7
아니오	292	81.3
계	359	100.0

또한 결혼 중개과정에서 성관계나 임신 경험, 출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강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23.1%에 달하는 여성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단순한 검사를 넘어서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의료적 시술을 권유하기도 한다.

<표 5> 성관계, 임신경험 등의 신체검사

	빈도	%
예	82	23.0
아니오	274	77.0
계	356	100.0

중개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거나 상대방이 결혼을 유보한 적이 있었다

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14.0%였다. <사례 11>의 심층면접 내용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녀 쌍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결혼중개업자가 여성을 속이고 남성으로 하여금 일단 결혼을 하여 여성을 입국시킨 후, 한국에서 이혼하도록 놓간을 부리는 정황이 드러난다.

<표 6> 일방적인 파혼통보나 결혼유보

	빈도	%
예	50	14.0
아니오	306	86.0
계	356	100.0

결혼 중개 과정에서 ‘한명의 남성 앞에 여러 명의 여성들이 늘어서서 선을 본 적이 있었다’는 여성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2.5%에 달했다. 이러한 결혼중개과정에서 물건구매식의 신분선택과정을 거친 여성들을 심층면접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표 7> 물건구매식 맞선방식

	빈도	%
예	150	42.5
아니오	203	57.5
계	353	100.0

결혼 중개과정에서 아주 여성의 입은 정보상의 불이익과 관련된 문항들에서도 위와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다. 먼저, ‘귀하는 결혼 전에 한국인 배우자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은 33.5%,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은 11.9%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5%의 여성들은 ‘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에 응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표 8>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빈도	%
전혀 아니다	99	27.4
대체로 아니다	98	27.1
대체로 그렇다	121	33.5
매우 그렇다	43	11.9
계	361	100.0

이러한 경향성은 정보 상의 불이익을 물은 다른 문항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귀하가 결혼 전에 한국인 배우자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일치합니까?’ 문항과 ‘결혼 전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결혼 전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일치합니까?’ 문항 등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전체의 60.4%에 달했다. 이러한 정보의 왜곡은 중간에 통역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통역은 대부분 결혼중개업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사이의 의사소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표 9>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빈도	%
전혀 아니다	101	28.0
대체로 아니다	117	32.4
대체로 그렇다	95	26.3
매우 그렇다	48	13.3
계	361	100.0

결혼중개업자의 정보는 정확히 거짓은 아니지만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여 한국생활과 상대방 남성에 대해 환상을 불어 넣는다.

<표 10> 한국생활에 대한 충분한 정보

	빈도	%
전혀 아니다	113	31.5
대체로 아니다	117	32.6
대체로 그렇다	86	24.0
매우 그렇다	43	12.0
계	359	100.0

이외에도 설문조사문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결혼중개업자들은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남성이 준 돈을 여성쪽에 전낸다고 말하고는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이다.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은 한국중개업자 뿐 아니라, 한국중개업체의 사업파트너인 현지인들도 동족 여성들의 돈을 가로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과의 갈등 때문에 결혼은 초기부터 빼겨지리게 된다.

3.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수도권 거주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 사이에 배우자에 의한 성폭행을 조사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13.456$, $p=.004$). 구체적으로, ‘남편이 원하지 않는 때에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배우자에 의한 성폭행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3.8%인 반면, 원주여성들의 경우에는 20.5%였다. 남편의 성폭행에 대해 ‘비교적 자주 그렇다’ 또는 ‘늘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원주여성의 경우 1.8%였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6.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1> 출신별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남편이 원하지 않는 때에 성행위를 강요했다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렇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369(76.2)	83(17.1)	25(5.2)	7(1.4)	484(100)
	원주여성	318(79.5)	75(18.8)	7(1.8)	0(0.0)	400(100)
	계	687(77.7)	158(17.9)	32(3.6)	7(0.8)	884(100)

$$\chi^2(3)=13.456, p<.01$$

시댁식구에 의한 성희롱을 조사한 문항에서 출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chi^2(3)=56.021$, $p<.001$). 구체적으로 ‘시댁식구 중 누군가 나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결혼이주여성은 20.7%에 달한 반면, 원주여성들의 경우에는 3.7%만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주 그렇다’와 ‘늘 그런 편이다’이라는 응답도 5.3%에 달했다.

<표 12> 출신별 시댁식구에 의한 성희롱

		시댁식구 중 누군가 나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렇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387(79.3)	75(15.4)	20(4.1)	6(1.2)	488(100)
	원주여성	385(96.3)	12(3.0)	3(0.8)	0(0.0)	400(100)
계		772(86.9)	87(9.8)	23(2.6)	6(0.7)	888(100)

$\chi^2(3)=56.021$, $p<.001$

수도권의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 사이에 가정내에서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에 차이가 있는지 보았다.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의한 신체적 폭력을 조사한 8개 문항(‘시댁식구 중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이 때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남편이 세게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였다’, ‘남편이 손으로 때리거나 말로 쳤다’, ‘남편이 머리채를 잡았다’, ‘남편이 어깨나 목을 웁켜쥐었다’,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쳤다’, ‘남편이 흉기(칼, 가위)로 위협하거나 공격했다’)에서 출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chi^2(5)=111.269$, $p<.001$). 결과 제시의 간결성을 위해서 8개 문항에서의 합산하여 교차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에서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응답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19.5%에 달했다. 이는 원주여성의 6.8%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비교적 자주’ 또는 ‘늘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의 5.6%로, 가정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신체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출신별 가정내 신체적 폭력

		가정내에서의 신체적 폭력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런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3118(80.5)	540(13.9)	132(3.4)	84(2.2)	3874 (100)
	원주여성	2981(93.2)	186(5.8)	32(1.0)	1(0.0)	3200 (100)
계		6099(86.2)	726(10.3)	164(2.3)	85(1.2)	7074 (100)

$$\chi^2(5)=111.269, p<.001$$

다음으로, 가정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248명, 원주여성 130명이 응답하였고,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6.159, p<.001$). 원주여성 응답자들 중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9.2%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반면, 결혼이주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40.7%로 원주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 출신별 가정내 인권침해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

		인권침해상황에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까?		계
		예	아니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101(40.7)	147(59.3)	248(100)
	원주여성	14(10.8)	116(89.2)	130(100)
계		115(30.4)	263(69.6)	378(100)

$$\chi^2(1)=36.159, p<.001$$

가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60.439, p<.001$). 원주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8%,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37.9%를 차지하였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도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3.3%를 차지해서 가장 높기는 했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잘 몰라서’라든지(20.5%)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하기 때문에(12.8%)’이나 ‘갈등에 대한 염려(14.5%)’ 등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나 방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남편에 종속된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여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처를 주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출신별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

		출신		계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원주여성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39(33.3)	52(44.8)	91(35.3)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잘 몰라서	24(20.5)	5(4.3)	29(11.2)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보복이 두려워서	0(0.0)	2(1.7)	2(0.8)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15(12.8)	6(5.2)	21(8.1)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 두려워서	17(14.5)	7(6.0)	24(9.3)
	창피해서	9(7.7)	44(37.9)	53(20.5)
	기타	13(11.1)	0(0.0)	13(5.0)
계		117(100)	116(100)	233(100)

$$\chi^2(6)=60.439, \text{ p}<.001$$

가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래된 결과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32.382, \text{ p}<.001$). 원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관계유지’가 78.5%, ‘이혼’이 15.4%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관계유지’(59.1%)와 ‘이혼’(11.3%) 이외에도 ‘가출’(7.0%)이나 ‘별거’(9.1%), 그리고 ‘기타’(13.5%)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다.

<표 16> 출신별 인권침해 사건이후 결과

		그 사건 이후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
		결혼관계유지	나의 가출	별거	이혼	기타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136(59.1)	16(7.0)	21(9.1)	26(11.3)	31(13.5)	230(100)
	원주여성	102(78.5)	7(5.4)	1(0.8)	20(15.4)	0(0.0)	130(100)
계		238(66.1)	23(6.4)	22(6.1)	46(12.8)	31(8.6)	360(100)

$$\chi^2(4)=33.121, \text{ p}<.001$$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경험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881$, $p<.001$). 가정내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원주여성의 경우 3.8%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결혼이주여성의 18.1%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출신별 경찰신고 여부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신체적·성적 폭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
		예	아니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41(18.1)	186(81.9)	227(100)
	원주여성	5(3.8)	125(96.2)	130(100)
	계	46(12.9)	311(87.1)	357(100)

$$\chi^2(1)=14.881, p<.001$$

4.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먼저 임금체불여부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41.5%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여부를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의 두집단간에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2)=15.861$, $p<.001$). 원주여성의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28%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는 44.3%로 나타났다.

<표 18> 출신별 임금 체불여부

		임금체불여부			계
		한번도 그런적 없다	몇 번 그런적 있다	항상 그랬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79(55.6)	59(41.5)	4(2.8)	142(100)
	원주여성	288(72.0)	110(27.5)	2(0.5)	130(100)
	400(100)	46(12.9)		311(87.1)	357(100)

$$\chi^2(2)=15.861, p<.001$$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았는지 조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51.6%는 체불된 임금을 ‘다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46.9%의 여성들은 ‘일부만 받았다’고 응답했다. 결혼이주여성과 원주민여성간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9> 체불된 임금의 지불여부

	빈도(%)
다 받았다	33(51.6)
일부만 받았다	30(46.9)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1.5)
계	64(100.0)

결혼이주여성의 절반가량은 노동현장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항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3.8%도 ‘자주 그렇다’고 응답했다. 언어적 폭력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0> 언어적 폭력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181(48.9)
가끔 그렇다	125(33.8)
자주 그렇다	51(13.8)
거의 항상 그렇다	13(3.5)
계	370(100.0)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인과 모국문화에 대해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29.2%의 여성들이 ‘가끔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7.6%의 여성들이 ‘자주 그렇다’는 응답을 했고, 1.9%의 여성들은 ‘거의 항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약 40%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모국인과 모국문화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모국인과 모국문화에 대한 모욕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225(61.3)
가끔 그렇다	107(29.2)
자주 그렇다	28(7.6)
거의 항상 그렇다	7(1.9)
계	367(100.0)

차별적 노동착취는 원주여성과 비교할 수 없어 원주여성을 대상으로는 질문하지 않았다. 45.2%의 결혼이주여성이 차별적 노동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례 3>과의 면접내용을 보면 동일노동에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몸이 아파 일을 못할 때도 한국인에게는 지불되는 임금이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지불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차별적 노동착취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185(54.8)
가끔 그렇다	74(21.9)
자주 그렇다	63(18.6)
거의 항상 그렇다	16(4.7)
계	338(100.0)

신체적 폭력은 7개 문항을 합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노동현장에서 신체적 폭력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93.2%였고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6.8%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에 집단간 비교결과 통계적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169.036$, $p<.001$).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을 합산한 결과 응답 비율이 6.8%였지만, 원주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0.5%에 지나지 않았다.

<표 23> 출신별 인권침해 사건이후 결과

		신체적 폭력 피해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런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2189(93.2)	130(5.5)	17(0.7)	12(0.5)	2348(100)
	원주여성	2787(99.5)	13(0.5)	0(0.0)	0(0.0)	2800(100)
계		4976(96.7)	143(2.8)	17(0.3)	12(0.2)	5148(100)

$\chi^2(5)=169.036$, $p<.001$

성희롱 여부를 질문한 문항에서 약 2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주여성과의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3)=53.834$, $p<.001$). 결혼이주여성의 19.4%가 성희롱 피해를 보고했지만 원주여성은 전체 응답자중 3.0%만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표 24> 출신별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피해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런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270(80.6)	52(15.5)	11(3.3)	2(0.6)	335(100)
	원주여성	388(97.0)	12(3.0)	0(0.0)	0(0.0)	400(100)
계		658(89.5)	64(8.7)	11(1.5)	2(0.3)	735(100)

$\chi^2(3)=53.834$, $p<.001$

결혼이주여성의 약 5%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 비교 결과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5> 출신별 성추행 피해경험

		성추행 피해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런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319(94.9)	13(3.9)	2(0.6)	2(0.6)	336(100)
	원주여성	397(99.3)	3(0.8)	0(0.0)	0(0.0)	400(100)
계		716(97.3)	16(2.2)	2(0.3)	2(0.3)	736(100)

$\chi^2(3)=13.282$, $p=.004$

한편, 노동현장에서 강간을 당한 뻔한 경험에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약 3%가 피해경험을 보고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에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3)=9.356$, $p=.025$).

<표 26> 출신별 강간시도 피해경험

		강간시도피해				계
		전혀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적 있다	비교적 자주 그린다	늘 그런 편이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326(97.0)	7(2.1)	1(0.3)	2(0.6)	336(100)
	원주여성	399(99.8)	1(0.3)	0(0.0)	0(0.0)	400(100)
계		725(98.5)	8(1.1)	1(0.1)	2(0.3)	736(100)

$\chi^2(3)=9.356$, $p=.025$

끝으로, ‘성매매를 제의받거나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1.5%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가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0.9%, ‘거의 항상 그렇다’는 응답자는 0.6%였다. 그러나 원주여성과의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7> 성매매 제의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325(98.5)
가끔 그렇다	3(0.9)
자주 그렇다	0(0)
거의 항상 그렇다	2(0.6)
계	330(100.0)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래된 결과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10.496$, $p=.033$). 원주여성의 경우에는 ‘계속 근무’(57.1%)하거나 ‘사직’(25.0%), ‘이직’(17.9%) 등을 한 적은 있어도 ‘해고’를 당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4.5%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으며 계속 근무한 사람의 비율이 원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45.5%).

<표 28> 출신별 노동현장내 인권침해 사건이후 결과

		인권침해 사건이후 결과					계
		계속 근무	사직	이직	해고	기타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51(45.5)	27(24.3)	15(13.5)	5(4.5)	11(11.7)	111(100)
	원주여성	32(57.1)	14(25.0)	10(17.9)	0(0.0)	0(0.0)	56(100)
계		83(49.7)	41(24.6)	25(15.0)	5(3.0)	13(7.8)	167(100)

$\chi^2(4)=10.496$, p=.033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62.5%, 원주여성 12.5%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1)=26.250$, p<.001). 즉 결혼이주여성이 원주여성에 비해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표 29> 출신별 도움요청 여부

		도움요청여부		계
		예	아니오	
출신	결혼이주여성 (수도권)	25(62.5)	15(37.5)	40(100)
	원주여성	7(12.5)	49(87.5)	56(100)
계		32(33.3)	64(66.7)	96(100)

$\chi^2(1)=26.250$, p<.001

직장에서 본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직장동료’가 25.9%로 가장 많았으며, ‘모국친구’가 17.2%, ‘직장상사 또는 고용주’가 12.1%로 나타났다. 이외 ‘이주 여성 지원 기관’이 13.8%, 그리고 ‘종교단체’가 10.3% 순이었다. 반면 ‘노동부’(1.7%)나 ‘지방자치단체’(3.5%) 등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표 30>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복수응답)

	빈도(%)
직장 내 동료	15(25.9)
직장 상사 또는 고용주	7(12.1)
보국 친구	10(17.2)
경찰	4(6.9)
이주여성 지원 기관 (상담소, 긴급 지원센터, 다문화 센터 등)	8(13.8)
종교단체	6(10.3)
지방자치단체	2(3.5)
노동부	1(1.7)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2(3.5)
기타	3(5.1)
계	58(100.0)

5.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주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문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당이나 가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문항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문항에서 38.2%는 가끔 그런 적 있다고 답하였으며, 비교적 자주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은 9.5%, 늘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여성도 전체의 3.3%에 달했다.

<표 31>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복수응답)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380(48.9)
가끔 그런 적 있다	297(38.2)
비교적 자주 그런다	74(9.5)
늘 그런 편이다	26(3.3)
계	777(100.0)

둘째,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의심을 받았다’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30.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23.0%의 여성들은 가끔 그런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4%는 비교적 자주, 2.4%는 늘 그렇다고 답했다.

<표 32> 외국인에 대한 의심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528(69.3)
가끔 그런 적 있다	175(23.0)
비교적 자주 그런다	41(5.4)
늘 그런 편이다	18(2.4)
계	762(100.0)

셋째,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는 거리를 걸을 때 한국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무시당했다’는 문항에서 그런 적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38.4%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끔 그렇다’는 응답이 29.2%로 다수였고, ‘비교적 자주 그렇다’는 6.0%, ‘늘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3.2%였다.

<표 33> 외국인에 대한 조롱과 무시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475(61.6)
가끔 그런 적 있다	225(29.2)
비교적 자주 그런다	46(6.0)
늘 그런 편이다	25(3.2)
계	771(100.0)

넷째,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무시당했다’는 문항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2.5%에 달했다. 이 가운데 3.9%는 ‘늘 그런 편이다’, 5.7%는 ‘비교적 자주 그런다’, 그리고 가장 많은 32.9%는 ‘가끔 그런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상점에서 상거래시의 무시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447(57.5)
가끔 그런 적 있다	256(32.9)
비교적 자주 그런다	44(5.7)
늘 그런 편이다	30(3.9)
계	777(100.0)

끝으로, ‘식당이나 가게에서 무작정 반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폭언을 했다’는 문항에서 전체의 32.5%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26.4%의 여성들은 가끔 그런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3%의 여성들은 비교적 자주, 그리고 1.8%의 여성들은 늘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5> 반말과 폭언

	빈도(%)
전혀 그런 적 없다	522(67.5)
가끔 그런 적 있다	204(26.4)
비교적 자주 그런다	33(4.3)
늘 그런 편이다	14(1.8)
계	773(100.0)

조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공공기관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실태는 선행연구와 심층면접에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혼히 경험하는 7개 사건 범주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문항 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하는 한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찰관에 의해 합당한 이유 없이 검문·검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서 전체의 18.8%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해서,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반말과 폭언

	빈도(%)
그런 적 없다	622(81.2)
한두번 그런 적 있다	139(18.1)
그런 적 많다	5(0.7)
계	766(100.0)

둘째, ‘귀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의 불친절이나 무시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23.5%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표 37> 반말과 폭언

	빈도(%)
그런 적 없다	582(76.5)
한두번 그런 적 있다	163(21.4)
그런 적 많다	16(2.1)
계	819(100.0)

셋째, ‘귀하가 피해자인 사건인데도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에서는 전체의 12.9%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표 38> 익울하게 가해자가 됨

	빈도(%)
그런 적 없다	654(87.1)
한두번 그런 적 있다	84(11.2)
그런 적 많다	13(1.7)
계	751(100.0)

넷째, ‘귀하가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이 귀하가 피해를 입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문항에서는 ‘한 두 번 그런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 ‘그런 적 많다’고 응답한 여성은 1.6%였다.

다섯째, ‘누구에 의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항에서는 46.2%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답했으며, 노동부 근로 감독관이 21.2%였다.

<표 39> 억울하게 가해자가 됨

	빈도(%)
그런 적 없다	638(85.4)
한두번 그런 적 있다	97(13.0)
그런 적 많다	12(1.6)
계	747(100.0)

<표 40> 사건해결에 미온적이었던 공무원(복수응답)

	빈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22(21.2)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7(46.2)
경찰관	11(16.3)
기타	24(25.0)
계	113(100.0)

여섯째, ‘귀하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불친절, 무시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한 번 이상 불친절이나 무시 때문에 모욕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18.7%였다.

<표 41> 공공기관에서의 모욕감

	빈도(%)
그런 적 없다	666(81.3)
한두번 그런 적 있다	146(17.8)
그런 적 많다	7(0.9)
계	819(100.0)

끝으로, 원치 않는 관공서 행사에 참가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의 12.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그런 적 있다’고 답했다.

<표 42> 공공기관에서의 모욕감

	빈도(%)
그런 적 없다	714(87.2)
한두번 그런 적 있다	100(12.2)
그런 적 많다	5(0.6)
계	819(100.0)

III. 결론

이러한 조사결과와 현재 국내의 법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종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폭력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국적법의 개선과 쉼터운영의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명백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과 유기 등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내부부의 경우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있는 부부간 강간과 같은 가정내 성폭력의 문제도 이주여성의 사례에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허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즉 확장된 개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주여성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기 보다 용이한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쉼터 내지는 보국의 친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보호기관에의 입소가 용이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정유지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악용될 소지에 관한 우려도 있으나, 오히려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정내에 여성을 억지로 묶어두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켜, 이혼이나 가출, 극단적으로는 여성의 죽음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결혼중개업 단속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종교를 빙자한 중매, 개인의 중매활동 등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이 미쳐야 한다. 법률적으로 정보제공의 입증책임문제를 결혼중개

업소가 지는 등의 실효적 개정도 요구된다. 세 번째, 남성과 시댁식구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교육은 피상적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여성국가의 성역 할구조와 가족문화, 먼저 이주한 여성이 말하는 이주여성의 어려움 등과 같이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다문화센터와 지역사회로 확장시켜 여성을 받아들이는 가정의 구성원과 그 지역사회 주민들도 접할 수 있게 한다면, 가정내 인권침해 뿐 아니라 지역사회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의 가정내 인권침해실태를 원주여성과 비교한 결과에는 두집단의 비동질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직장내 인권침해결과에서는 이주여성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주여성들은 원주여성들에 비해 장시간 노동과 불평등한 노동착취, 신체적·성적 폭력에 시달렸고, 임금체불 등의 피해경험률도 원주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실태를 실증한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미인데,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 외국인 인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교육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이주에서 정주까지”에 대한 토론문

김희강(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제목이 나타내듯,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으로 이주, 정착 그리고 한국 내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생활과 그들이 겪는 불평등과 불이익을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특히 원주민과의 비교 연구는 차후 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가 설문조사의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듭니다만, 추후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분석적인 학술 논문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논평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제 논평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침해란 무엇일까? 어떨 때 인권침해일까? 어떤 경우에 인권침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연구에서 제시한 소위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모두 인권침해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한 사례들일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UN과 국제기구들은 ‘여성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여성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들고 있습니다.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전시강간, 성희롱,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또는 (여)성을 수단으로 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해에 따른다면, 이 연구에서 <2.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에서 ‘원치 않는 결혼에 대한 강요나 협박,’ ‘성관계 등에 대한 신체검사,’ <3.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에서 ‘남편에 의한 성폭력 피해’나 ‘시댁식구에 의한 성희롱,’ <4.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서 ‘성희롱,’ ‘성추행,’ ‘강간 피해’ 등은 분명한 인권침해 실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서 ‘일방적인 파혼 통보,’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정보적 불이익,’ <4.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서 ‘임금 체불’ 등을 인권의 단어, 인권침해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연구 7쪽에서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설명하면서, 설문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침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결혼중개업자들은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남성이 준 돈을 여성쪽에 건넨다고 말하고는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이다”(7쪽)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인 사기를 인권침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이나 속임/사기의 경우에는 물론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 부정의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권리의 침해가 물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둘째,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연구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보다는 / 혹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해 차별의 문제를 보다 부각시키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원주여성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은 ‘한국인 여성’과 비교하여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4.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원주여성’과 비교하여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문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오히려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지적한 결혼중개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금전적인 사기에 대한 문제도 ‘한국인 여성’이나 혹은 ‘외국인 남성’과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차별의 내용을 보다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따라서 언뜻 보면 이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와 정착에 관한 설문조사라

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게는 그 내용을 고민하면 할수록 매우 복잡하고 체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한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과 차별의 내용이 함께 섞이고 교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도 ‘여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제3세계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복합적인 내용이 이 연구의 설문조사와 분석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불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이를 막연히 인권침해의 언어로, 단순히 인권이라는 프리즘으로 봄으로써 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불이익의 세부 맥락과 구체적인 동학,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데이터 자체만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설문조사가 있어, 추후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몇몇 내용을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표 17>은 가정폭력시 경찰신고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결혼이주여성 18.1% 대 원주여성 3.8%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찰신고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차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태고자 한다면,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에 대한 경찰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표 18>은 결혼이주여성의 임금체불 비율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원주여성과 비교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임금체불 비율이 높다는 데이터 인데, 이 데이터도 그 자체로 인권침해나 심지어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에게 임금체불이 높은 이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은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영세한 업체에 취업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토론】

토 론 문

차 용 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

2010년 10월 27일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이 1,794,239명이 체류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민자는 1,938,804명으로 거의 200만명에 달한다. 위 체류 외국인 중에서 결혼이민자는 120,474명으로서 6.7%에 해당된다.

결혼이민(또는 이주혼인)은 가족이민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가족이민은 가족의 형성(외국인배우자와 한국인배우자 간의 결합), 외국인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한국인배우자의 입양을 통하여) 가족재결합, 외국인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의 유입 및 불법취업 문제,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한 가족재결합, 그리고 전체 가족의 이민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이주주기는 복잡한 법률관계 또는 생활관계와 엮어져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한국에서 가족이민의 진행과정은 종전의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사회적 관점’을 넘어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접근이라는 ‘경제적 관점’, 부모 등 가족초청과 취업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결혼이민의 악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은 ‘끝임 없는 추격전’에 비유될 수 있다. 위장결혼(가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자동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결혼증개업체의 인권침해적 중개로 인해 정부가 결혼이민 사증심사 강화에 관여하게 되었다. 2006년 베트남 정부의 국제결혼 심사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국제결혼증개업 시장은 캄보디아로 이동하였고, 그 후 캄보디아는 국제결혼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2008년 국적법 개정으로 혼인피해자가 된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2010년 7월 정신질환이 있던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에게 입국한지 1주일 만에 살해당한 탓티황옥 사건 등으로 2014년 4월부터 결혼이민 사증심사 요건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위장결혼(가장혼인), 이혼, 자녀양육 등 판단에 대한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

사기능 분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약결과 및 법원의 재판결과가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므로 혼인관계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민법, 가족법, 형사법의 각자 고유영역이 존중되어질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정책의 집행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민간지원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는 국내 입국 후,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민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전까지 체류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기능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발표문에서 언급은 없지만,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외국 출생하여 입국한 자녀(정책 용어로서 ‘중도입국 미성년 자녀’라고 말한다) 및 결혼이민자와 국민 간에 국내 출생한 자녀(법률 용어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다문화학생’이라고 규정한다)가 동일시되는 연구풍토와 언론보도 태도를 빨리 시정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국민 간에 국내 출생한 자녀’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의 대상으로 되어야지만, 국민인 학생과 구별하여 ‘다문화학생’으로 명칭 부여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차별, 구획화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다.

【종합토론】

토 론 문

최 성 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다문화정책은 발제자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 증가와 결부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 다문화가족지원법('08.3.21.제정)은 결혼이민자,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아동 보육·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14년 1월 기준 79.5만명)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21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면서, 가족교육 및 상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고, 많은 다문화가족이 도움을 받고 있음.

일례로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실태조사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초기 해체율이 감소되었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향상되었으며, 고용률은 증가하고 빈곤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 결혼초기(5년이내) 해체비율 : ('09년) 53.1% → ('12년) 37.8%
- * 본인이 한국어(말하기)를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 : ('09) 37.3% → ('12) 57.5%
- * 고용률 : 여성결혼이민자 ('09) 36.9% → ('12) 53.0%
남성결혼이민자 ('09) 74.3% → ('12) 80.3%
- *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비율 : ('09년) 59.7% → ('12년) 41.9%
- * 결혼이민자의 5년 이상 거주비율 : (09년) 41% → ('12년) 72.5%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 쉼터, 그룹홈, 자활 지원센터 등 27개의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14년에는 쉼터 2개소, 그룹홈 1개소를 확대하였음. 이러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뿐 아니라, 동법 제2조제1호의 보다 넓은 범위의 가정폭력 행위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성폭력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무료법률지원을 통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의료비 지원 지침을 개선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를 지원토록 개선하였음. 아울러, 심각한 성폭력 외상 피해, 자살 등 정서적 위기의 경우 '간병비' 지원이 새롭게 시행되어, 보호자가 없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등에게 보다 유용한 서비스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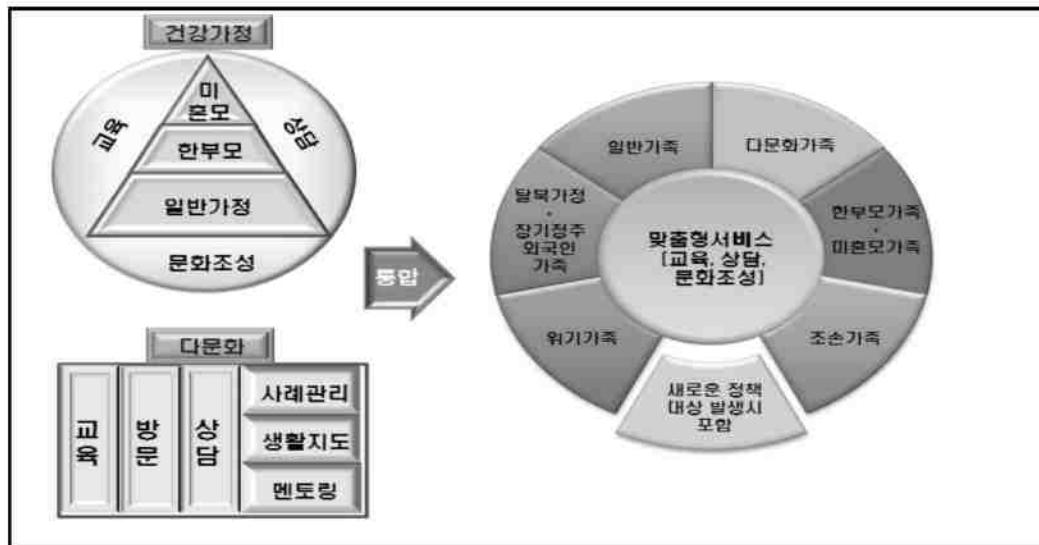
또한, 분리되어 있던 이주여성긴급전화와 다누리콜센터를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로 통합('14.4월)하여 전국의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과 연계하여 가족교육 및 상담, 긴급지원, 취업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등 보다 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정보전화센터 출범이후 상담건수 및 긴급지원 실적도 증가하고 있음.

* 통합 후 상담실적(전년 동기 대비) : 31,911건 → 41,753건(증 30.8%)

김지영 센터장께서 제안하신, 배우자와 시댁식구 등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배우자 등 가족교육을 강화하고자 센터별 연간 6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김혜순 교수께서 제안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민자센터로 전환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보고 일반 가족과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으로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개선방안에는 방문교육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다문화가족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중복·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통합 가족센터 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통합센터 : 50개소(목표)



결혼중개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연 2회 이상), 중개업체 현황의 정기적인 공시(월 1회), 중개업 종사자 자질항상 소양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다른 민족·국가·인종 등에 대한 차별광고 적발건수는 감소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는 결혼중개업자만이 결혼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이 강화됨.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요건을 신설(‘13.8월 시행)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감소 추세임(‘12.8월 1,463개소→‘14.8월 470개소).

아울러 중개업이 불법인 국가(베트남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를 할 수 있는데,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 유관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현지 불법중개업에 대한 규율·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 행복e음(중개정보)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비자심사 정보)을 연동하여 비자심사시 무등록 중개업자 비자발급 제한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다문화가족 자녀, 그밖에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레인보우수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부모를 둔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 인지·귀화자와 내국인 가족 등으로 구성된 가족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통합상담, 부모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등임.

일부 국민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사실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타 법에 의한 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인 경우가 많음.

정부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확충한 것은 결혼이민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초기 인권피해 사례나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그간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이외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장기거주 외국인 가족이나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때문에 이민정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은 적절하지 못함.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처간 실무협의체 등을 통하여 한국어교육 등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소득수준별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Dæho

LAWFIRM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

유 철 환
서 주 흥

석 동 현

서울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역삼동) 대호레포츠빌딩 6층
대표전화 : 02) 568-5200 팩스 : 02) 561-5100